

2024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세법은 복잡·다양한 경제현상과 조세정책의 변화를 수시로 반영하여 개정되는 특수성이 있어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종사직원도 올바르게 세법령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종사직원이 세법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세목별 집행기준을 발간하여 꾸준히 제·개정 해왔습니다.

이번에 14개 세목에 대한 집행기준의 개정을 통해 최신 세법령, 대법원 판례, 심판례 및 해석례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반영하고, 조문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발간한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은 최근 개정된 세법령을 반영하였고, 질의회신·판례 등 다양한 사례를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으며, 그림과 도표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아무썸록 이번에 개정된 2024년 집행기준이 종사직원에게는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 집행을 위한 과세기준이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0월

징세법무국장 안 덕수



## 2024년 집행기준 일러두기



1.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기본통칙을 기본토대로 판례·질의회신 등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기본통칙을 보완하는 실무지침에 해당합니다.

※ 본 집행기준 책자는 2024년 9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기본통칙 및 판례·질의회신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며, 격년을 주기로 발간하고 있어 이 책자 발간 이후 세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거나 실제 업무를 집행할 경우 관련 법령·예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총 6장으로 편제되었고, 제1장(3개), 제2장(202개), 제3장(36개), 제4장(16개), 제5장(31개), 제6장(4개), 총 293개 집행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첫째, 현행 기본통칙을 구체적 기준 및 적용사례로 구분하여 체계성 있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둘째, 기본통칙에 없어 집행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내용을 보완·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문장으로 표현하기 복잡한 내용은 도표·그림·수식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4. 집행기준에 사용된 관리번호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기준】

1 - 1 - 1  
법 조문                      시행령 조문                      일련번호

5.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_1**

집행기준 2-0-1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1  
 집행기준 2-0-2 【업종의 분류】 ..... 1  
 집행기준 2-0-3 【감액신청내용과 정부조사내용과의 차이 처리】 ..... 1

**제2장 직접국세 \_2**

집행기준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2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 2  
 집행기준 6-0-3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3  
 집행기준 6-0-4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 4  
 집행기준 6-2-1 【중소기업의 범위】 ..... 4  
 집행기준 6-2-2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 6  
 집행기준 6-2-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 7  
 집행기준 6-6의4-1 【중견기업의 범위】 ..... 7  
 집행기준 7-0-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 8  
 집행기준 7-0-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 8  
 집행기준 7-0-3 【소기업의 판단기준】 ..... 10  
 집행기준 7-0-4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 11  
 집행기준 7-0-5 【감면대상소득의 계산사례】 ..... 11  
 집행기준 7의4-6의4-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12  
 집행기준 7의4-6의4-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용어의 정의】 ..... 13  
 집행기준 7의4-6의4-3 【상생결제제도】 ..... 13  
 집행기준 7의4-6의4-4 【현금성결제금액】 ..... 14  
 집행기준 7의4-6의4-5 【구매대금의 범위 및 지급기한 요건】 ..... 14  
 집행기준 8의3-7의2-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15  
 집행기준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16  
 집행기준 10-0-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20  
 집행기준 10-0-2 【정부출연금 등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 20  
 집행기준 10-0-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0

CONTENTS

집행기준 10-0-4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21
집행기준 10-9-1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21
집행기준 10-9-2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21
집행기준 12-0-1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술의 범위】	21
집행기준 12-0-2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사례】	22
집행기준 16-14-1	【구주매출분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 여부】	23
집행기준 18-16-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3
집행기준 18-16-2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24
집행기준 18의2-16의2-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4
집행기준 18의2-16의2-2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가입 연금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25
집행기준 21-0-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26
집행기준 21-0-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6
집행기준 22-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27
집행기준 24-0-1	【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완료일의 기준】	27
집행기준 24-0-2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27
집행기준 24-0-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의 범위】	28
집행기준 24-21-1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및 대상 사업자】	28
집행기준 24-21-2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자산】	29
집행기준 24-21-3	【재화구매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산정방법】	29
집행기준 29의7-26의7-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0
집행기준 29의7-26의7-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수】	31
집행기준 29의7-26의7-3	【고용증대세제의 사후관리】	32
집행기준 30의5-27의5-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4
집행기준 30의5-27의5-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35
집행기준 30의5-27의5-3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35
집행기준 30의5-27의5-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35
집행기준 30의5-27의5-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36
집행기준 30의6-27의6-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7
집행기준 30의6-27의6-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추징】	38
집행기준 30의6-27의6-3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38
집행기준 30의6-27의6-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38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의6-27의6-5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대한 과세방법 선택】 ..... 39

집행기준 30의6-27의6-6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39

집행기준 30의6-27의6-7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기타 과세특례】 ..... 39

집행기준 31-28-1 【법인설립 후 1년의 계산방법】 ..... 40

집행기준 31-28-2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 40

집행기준 31-28-3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 ..... 40

집행기준 31-28-4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 40

집행기준 31-28-5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 41

집행기준 31-28-6 【사업폐지의 범위】 ..... 41

집행기준 31-28-7 【주식처분의 범위】 ..... 41

집행기준 32-29-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 42

집행기준 32-29-2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 42

집행기준 32-29-3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42

집행기준 32-29-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 42

집행기준 32-29-5 【사업폐지의 범위】 ..... 42

집행기준 32-29-6 【주식처분의 범위】 ..... 43

집행기준 60-54-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 ..... 43

집행기준 60-56-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44

집행기준 60-56-2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 45

집행기준 60-56-3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46

집행기준 63-60-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6

집행기준 63-60-2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 47

집행기준 63-60-3 【세액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 ..... 48

집행기준 63-60-4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 48

집행기준 63의2-60의2-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 요건】 ..... 49

집행기준 63의2-60의2-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 50

집행기준 63의2-60의2-3 【수도권 밖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 50

집행기준 63의2-60의2-4 【이전인원비율의 계산】 ..... 50

집행기준 63의2-60의2-5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51

집행기준 63의2-60의2-6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 51

집행기준 69-66-1 【자경농지 감면 요건】 ..... 52

CONTENTS

집행기준 69-66-2	【자경농지 감면 대상자】	52
집행기준 69-66-3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52
집행기준 69-66-4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52
집행기준 69-66-5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 여부】	53
집행기준 69-66-6	【직접 경작의 의미】	53
집행기준 69-66-7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 책임】	53
집행기준 69-66-8	【자경기간 계산】	53
집행기준 69-66-9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53
집행기준 69-66-10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	54
집행기준 69-66-11	【휴경농지로서 보상을 받은 경우】	54
집행기준 69-66-12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54
집행기준 69-66-13	【피상속인이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기간 계산】	54
집행기준 69-66-14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55
집행기준 69-66-15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특례】	55
집행기준 69-66-16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자경기간】	56
집행기준 69-66-17	【경작행위 금지 요청을 받은 경우】	56
집행기준 69-66-18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	56
집행기준 69-66-19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56
집행기준 69-66-20	【농지의 범위】	56
집행기준 69-66-21	【농지의 판정】	57
집행기준 69-66-2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 배제】	57
집행기준 69-66-23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57
집행기준 69-66-24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58
집행기준 69-66-25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58
집행기준 69-66-26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58
집행기준 69-66-27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경우】	58
집행기준 69-66-28	【휴경상태의 농지】	58
집행기준 69-66-29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59
집행기준 69-66-30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액 개정 연혁】	59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9의2-66의2-1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 59

집행기준 69의3-66의3-1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59

집행기준 69의4-66의4-1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60

집행기준 70-67-1 【2010.1.1. 이후 농지 대토(양도)시 감면배제되는 농지의 범위】 ..... 60

집행기준 70-67-2 【2014.7.1. 이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 61

집행기준 70-67-3 【2014.6.30. 이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 61

집행기준 70-67-4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수용된 경우】 ..... 62

집행기준 70-67-5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상속된 경우】 ..... 62

집행기준 70-67-6 【개간한 농지의 대토】 ..... 62

집행기준 70-67-7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하는 경우】 ..... 62

집행기준 70-67-8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 63

집행기준 70-67-9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 63

집행기준 70-67-10 【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 63

집행기준 70-67-11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4년 미만 자경한 상태에서 다시 대토되는 경우】 ..... 63

집행기준 70-67-12 【농지 대토의 감면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의 납부】 ..... 63

집행기준 70의2-67의2-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 64

집행기준 71-68-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64

집행기준 71-68-2 【영농자녀에 대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 64

집행기준 71-68-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 65

집행기준 71-68-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 65

집행기준 71-68-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배제사유】 ..... 66

집행기준 77-72-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 66

집행기준 77-72-2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일반매매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 ..... 67

집행기준 77-72-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연혁】 ..... 67

집행기준 77-72-4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 67

집행기준 77의2-73-1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방법】 ..... 67

집행기준 77의2-73-2 【대토한 토지의 양도시 과세방법】 ..... 68

집행기준 77의3-74-1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요건】 ..... 68

집행기준 77의3-74-2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종 소유 토지】 ..... 68

집행기준 85의7-79의8-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 지역의 범위】 ..... 69

CONTENTS

집행기준 85의7-79의8-2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69
집행기준 85의7-79의8-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	69
집행기준 87-0-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주택보유요건】	69
집행기준 87-0-2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배제 관련 사례】	70
집행기준 97-97-1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70
집행기준 97-97-2	【감면대상자】	70
집행기준 97-97-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1
집행기준 97-97-4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의 임대 주택 수 계산방법】	71
집행기준 97-97-5	【임대기간 계산방법】	71
집행기준 97-97-6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임대기간 계산】	71
집행기준 97-97-7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72
집행기준 97-97-8	【임대기간 중에 자가거주한 경우】	72
집행기준 97의2-97의2-1	【신축임대주택의 취득 요건】	72
집행기준 97의2-97의2-2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72
집행기준 97의2-97의2-3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갖춘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2
집행기준 97의2-97의2-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73
집행기준 97의2-97의2-5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73
집행기준 97의2-97의2-6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	73
집행기준 97의2-97의2-7	【신축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73
집행기준 97의2-97의2-8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4
집행기준 97의3-97의3-1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74
집행기준 97의4-0-1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율】	74
집행기준 97의4-97의4-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75
집행기준 98-98-1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75
집행기준 98-98-2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75
집행기준 98의3-98의3-1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76
집행기준 98의3-98의3-2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의 의미】	76
집행기준 98의3-98의3-3	【주택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76
집행기준 98의3-98의3-4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76
집행기준 98의3-98의3-5	【주택법에 따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76
집행기준 99-99-1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	79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9-99-2	【다가구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해당 여부】 .....	79
집행기준 99-99-3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	79
집행기준 99-99-4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	79
집행기준 99-99-5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	80
집행기준 99-99-6	【준공된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	80
집행기준 99의2-99의2-1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81
집행기준 99의2-99의2-2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 .....	83
집행기준 99의2-99의2-3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83
집행기준 99의2-99의2-4	【조특법§99의2 적용대상 분양권을 상속받는 경우 과세특례 승계 여부】 .....	84
집행기준 99의2-99의2-5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시 주민등록기간】 .....	84
집행기준 99의2-99의2-6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84
집행기준 99의2-99의2-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	84
집행기준 99의2-99의2-8	【현지이민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	84
집행기준 99의2-99의2-9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주택 양도시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	85
집행기준 99의2-99의2-10	【무허가·미등기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85
집행기준 99의2-99의2-11	【경락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85
집행기준 99의2-99의2-12	【1세대1주택 확인 신청기한】 .....	85
집행기준 99의2-99의2-13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제출기한】 .....	85
집행기준 99의2-99의2-14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86
집행기준 99의4-99의4-1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	86
집행기준 99의4-99의4-2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한 경우의 의미】 .....	86
집행기준 99의4-99의4-3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의 증축, 딸린 토지의 추가 취득 등 변동이 있는 경우】 .....	86
집행기준 99의4-99의4-4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	86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	87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2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 산정방법】 .....	87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	87

제3장 간접국세 \_89

집행기준 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89
집행기준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89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89
집행기준 105-0-4	【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90
집행기준 105-0-5	【영세율 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90
집행기준 105-0-6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90
집행기준 105-0-7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91
집행기준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	91
집행기준 105의2-0-1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91
집행기준 105의2-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92
집행기준 106-0-1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92
집행기준 106-0-2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92
집행기준 106-0-3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93
집행기준 106-0-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93
집행기준 106-0-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93
집행기준 106-0-6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94
집행기준 106-0-7	【사회기반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94
집행기준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94
집행기준 106-106-2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95
집행기준 106-106-3	【영세율 및 면세 붙임서류】	95
집행기준 106의2-0-1	【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96
집행기준 106의2-0-2	【면세유 공급업자의 고정자산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	96
집행기준 106의2-0-3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97
집행기준 106의4-106의9-1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97
집행기준 106의4-106의9-2	【금 관련 제품의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98
집행기준 106의4-106의9-3	【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	98
집행기준 106의9-106의13-1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	99
집행기준 106의9-106의13-2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99
집행기준 107-0-1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100
집행기준 107-0-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100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7-108-1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101
집행기준 107-108-2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101
집행기준 108-110-1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102
집행기준 108-110-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103
집행기준 108-110-3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103
집행기준 108-110-4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103

**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_104

집행기준 121의2-0-1	【조세감면 신청 등】	104
집행기준 121의2-0-2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감면】	104
집행기준 121의2-0-3	【조세감면결정의 효력 상실】	104
집행기준 121의2-116의2-1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105
집행기준 121의2-116의2-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106
집행기준 121의2-116의2-3	【감면세액의 계산】	107
집행기준 121의2-116의2-4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의 감면기간 단축】	108
집행기준 121의2-116의2-5	【조세감면의 한도】	108
집행기준 121의2-116의4-1	【사업개시일의 신고 등】	109
집행기준 121의4-116의6-1	【증자의 조세감면】	109
집행기준 121의4-116의6-2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 적용시 구분경리】	110
집행기준 121의4-116의6-3	【우선주발행시 감면비율의 계산】	111
집행기준 121의5-0-1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111
집행기준 121의5-0-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면제】	111
집행기준 121의5-0-3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감액세액 추징 여부】	112
집행기준 121의5-116의10-1	【감면세액 추징 면제 시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12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_ 114

집행기준 126의2-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114
집행기준 126의2-0-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115
집행기준 126의2-0-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공제의 중복적용】	116
집행기준 126의3-0-1	【현금영수증】	116
집행기준 126의3-121의3-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116
집행기준 126의7-121의7-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개요】	116
집행기준 126의7-121의7-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거래 흐름】	117
집행기준 127-0-1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118
집행기준 127-0-2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118
집행기준 127-0-3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120
집행기준 127-0-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121
집행기준 127-0-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	121
집행기준 127-0-6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122
집행기준 127-0-7	【토지양도에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122
집행기준 127-0-8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시 감면과 과세이연 동시 적용 여부】	122
집행기준 128-0-1	【추계과세시 세액공제 배제】	123
집행기준 128-0-2	【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	124
집행기준 128-122-1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125
집행기준 128-122-2	【사업용계좌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배제】	125
집행기준 130-124-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125
집행기준 130-124-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설치 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126
집행기준 132-126-1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26
집행기준 132-126-2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127
집행기준 132-126-3	【최저한세액의 계산】	129
집행기준 132-126-4	【개인의 최저한세】	130
집행기준 132-126-5	【개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131
집행기준 133-0-1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원인 경우】	132
집행기준 133-0-2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원인 경우】	133
집행기준 133-0-3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범위】	133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3-0-4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 계산】 .....	134
집행기준 133-0-5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제한이 없는 경우】 .....	134

**제6장 보칙 \_135**

집행기준 143-136-1	【구분경리】 .....	135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137
집행기준 144-136의2-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한도】 .....	138
집행기준 146-137-1	【감면세액의 추징】 .....	139
* 2024년 세법집행기준 신규조문 대비표(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분야)	.....	141
* 2024년 세법집행기준 신규조문 대비표(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분야)	.....	144
* 2024년 세법집행기준 신규조문 대비표(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분야)	.....	146
* 2024년 세법집행기준 신규조문 대비표(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분야)	.....	147
* 2024년 세법집행기준 신규조문 대비표(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분야)	.....	150
* 2024년 세법집행기준 신규조문 대비표(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분야)	.....	152



집행기준 2-0-1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집행기준 2-0-2 업종의 분류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집행기준 2-0-3 감액신청내용과 정부조사내용과의 차이 처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정부가 조사결정한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결정한 내용이 감면의 기초가 된다.

집행기준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창업중소기업이 독립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2-1 제3항 제3호의 기업은 제외)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 ②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 ③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text{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 \frac{\text{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text{창업 당시 (토지 + 감가상각자산)의 가액}} \leq 30\%$$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⑦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하다.

**집행기준** 6-0-3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 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집행기준** 6-0-4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2-1【중소기업의 범위】④에 따른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6-2-1 중소기업의 범위

- 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다음 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규모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 일 것
독립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업종기준	주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 호텔업, 여관업 및 주점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매출액 1,000억원 이하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	E (E36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서비스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 (N76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 가.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 나.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같은 영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④ 중소기업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거나 규모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및 독립성 요건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 및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집행기준**

**6-2-2**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 ①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②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규모기준은 해당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③ 중소기업판정을 위한 규모기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6-2-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 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②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다.
- ③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 ④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집행기준** 6-6의4-1 중견기업의 범위

기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이 아닐 것</li> <li>·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li> </ul>
업종기준	주된 사업이 다음의 업종이 아닐 것 ① 소비성서비스업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독립성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규모기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액이 3천억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는 5천억원 미만

집행기준

7-0-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업종

집행기준

7-0-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① 소기업의 감면비율

업종 \ 장소	수도권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10%
기타 업종	20%	30%

② 중기업의 감면비율

업종 \ 장소	수도권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5%
기타 업종	-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함

④ 소기업의 요건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매출액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매출액 120억원 이하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매출액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매출액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매출액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⑤ 감면세액 계산사례 (수도권외 소기업의 경우)

구 분	금액(천원)	산출근거(과세표준 × 감면대상 소득 × 감면율)
과세표준	1,000,000	제조업 소득 6억원, 소매업 소득 3억원, 이자소득 1억원
산출세액	180,000	2천만원 + (10억원 - 2억원) × 20%
감면세액	계	① + ②
	제조업	① 180,000천원 × 6억/10억 × 30%
	소매업	② 180,000천원 × 3억/10억 × 10%
납부할세액	142,200	180,000천원 - 37,800천원(감면한도 1억)

\* 이자소득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집행기준

7-0-3 소기업의 판단기준

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한 다음의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구 분	매출액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②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③ 종전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 종업원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소기업으로 보아 왔으나,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소기업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와 같이 변경된 소기업 판정기준은 20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경과조치를 두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본다.

집행기준

7-0-4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frac{\text{감면대상 소득}}{\text{과세표준}}$  × 감면비율
- 감면한도 = Min(①1억원, ②상시근로자수 감소 : 1억원 - (5백만원 × 감소 인원 수))

과세표준금액에 공제금액(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감면대상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text{감면대상 소득} = \text{감면대상 사업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공제액}$$

2. 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text{감면대상 소득} = \text{감면대상 사업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left( \text{공제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text{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right)$$

집행기준

7-0-5 감면대상소득의 계산사례

-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함에 있어 어음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비용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 및 비용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를 가감한다.
- ②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③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 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인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 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 ⑧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⑨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집행기준**

**7의4-6의4-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1의 금액에 2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금액에서 현금성결제금액 감소분을 차감한다.
  -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5
  -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3
  -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 × 1만분의15

**집행기준** 7의4-6의4-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용어의 정의

- ① 구매대금 :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 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② 판매대금 :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 ③ 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一覽出給式)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
- ④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 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
- ⑤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 ⑥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 ⑦ 구매론 제도 :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
- ⑧ 네트워크론 제도 :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

**집행기준** 7의4-6의4-3 상생결제제도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집행기준**

7의4-6의4-4

**현금성결제금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집행기준**

7의4-6의4-5

**구매대금의 범위 및 지급기한 요건**

- ① 구매대금은 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 여부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 대가로 본다.
- ③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하 “지급기한 등”)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으로 하고, 그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정 기한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④ 1역월(曆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서 지급기한 등을 발행일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일 이전에 결제하는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⑤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등이 공휴일,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개시일을 그 기한이 되는 날로 본다.

**집행기준**

**8의3-7의2-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함)에 출연하는 경우
  -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 자산으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측정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구 분	비 용
<p>1. 연구개발</p>	<p>가. 자체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sup>1)</sup>(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sup>2)</sup>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sup>3)</sup>(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외)</li> <li>2) 1)에 해당하는 직원 및 전담요원이 가입한 제30조의 4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li> <li>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li> <li>4)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li> </ol> <p>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li> <li>나) 국공립연구기관</li> <li>다)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li> <li>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li> <li>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li> <li>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li> <li>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li> <li>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li> <li>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li> </ol> </li> <li>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li> </ol> <p>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p> <p>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발비<sup>4)</sup></p> </li></ol>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p>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p> <p>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p> <p>사.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p>
2. 인력개발	<p>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p> <p>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p> <p>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p> <p>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p> <p>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p> <p>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sup>5)</sup></p> <p>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sup>6)</sup></p> <p>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sup>7)</sup></p> <p>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sup>8)</sup></p> <p>마.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sup>9)</sup>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sup>10)</sup></p> <p>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p> <p>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p> <p>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p> <p>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p>

1)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

-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2) 직원 :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인.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3) 인건비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 4) 소화개발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 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 다. 외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 ① 영 별표 4의 산업(기술집약적 산업)
  - ② 광업
  - ③ 건설업
  -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 ⑤ 물류산업 :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트타임대업
  - ⑥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으로 한정),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 제외)으로 한정])
  - ⑦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
  - ⑧ 법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
- 5) 위탁훈련비 :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경리·인사·총무 등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가.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6)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 라.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7)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가.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 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1호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2호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 1)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 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빠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 마.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 바.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 진단·컨설팅 비용

8)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

- 가.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소프트웨어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10) 각 목의 비용에 준하는 것
- 나.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 (나)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 (다) 삭제 <2010.4.20>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 라.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 마.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9)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대학

- 가.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 나.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10)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가.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로
- 다.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 라.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집행기준** 10-0-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① + ② + ③
①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Min{①수입금액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3, ②1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30%(중소기업 40%)+Min(①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비율×3, ② 10%)
㉞, ㉟ 중 선택			
㉞ 당기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액			
③	① 중소기업(유예기간 경과 5년 이내 기업 포함)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중소기업) 15%(유예기간 경과 3년 내) 10%(유예기간 경과 3년 후 2년 내)
	②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으로 ①에 해당하지 않는 중견기업	×	8%
	③ ①, ②외의 기업(일반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 × 1/2 (2% 한도)
	㉟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집행기준** 10-0-2 정부출연금 등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 ①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②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등의 자산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집행기준** 10-0-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집행기준** 10-0-4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집행기준** 10-9-1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②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한 내국법인이 2010과세연도에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연구개발출연금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집행기준** 10-9-2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이하 “분할 등”이라 함)를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이하 “분할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등의 전일까지 분할 등을 하기 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 등을 한 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12-0-1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술의 범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특허권등”)을 이전(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기술비법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제외한다)
4. 기술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 나. 해당기업이 특허권등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 일 것

**집행기준**

**12-0-2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사례**

- ①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다.
- ②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국내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 내국인이 그 기술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 ④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혹은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 법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⑤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거주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나, 당해 특허권자에게 고용되어 연구에 종사한 직원이 당해 특허권자로부터 연구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16-14-1

구주매출분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 여부

-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 ※ 구주매출이란 대주주나 일반 주주 등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 중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의미

집행기준

18-16-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 \*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다음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함
    - 가.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나. 외국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국외연구기관등)에서 5년(박사학위자는 박사학위 취득 전 경력포함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제기본법상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단, 국기령 제1조의2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 제외), 라. 다음의 어느 하나 ①영 제16조의3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행정사무 제외)하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16조의3제2항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②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12.31.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이때,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란 ①에서 규정한 외국인기술자 중 특화선도기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름)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③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징수할 소득세에서 상기 ①, ②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집행기준

18-16-2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19.1.1.이후 2026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감면기간 10년  
 (예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19.3.10. 최초로 근로 제공하는 경우 : 10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인 2029년3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 감면  
 ※ 2022.12.31. 5년 → 10년 개정, 2023.1.1.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적용 (부칙 제19199호 제9조)
-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20.1.1. 이후 2022.12.31.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예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20.3.10.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2023년 3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 감면,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 감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동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감면기간이 속하는 달까지로 계산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입사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퇴직기간도 동 감면기간에 포함된다.

집행기준

18의2-16의2-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외국인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특수관계기업에 근로제공한 경우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 2022.12.31. 5년 → 20년 개정, 2023.1.1.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부칙 제19199호 제10조)
- ②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소득령 §17의4 제1호)은 제외\*), 공제, 감면 및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 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소득의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집행기준**

18의2-16의2-2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가입 연금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집행기준

21-0-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음
  -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 3. 금융기관<sup>1)</sup>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sup>2)</sup>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금융기관

-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은행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2) 유가증권

- ①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 다만,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기준

21-0-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내국법인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 21조 제1항)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집행기준** 22-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① 내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법인세법」 제57조제3항)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b>해외자원 개발사업</b>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input type="checkbox"/> 농산물 <input type="checkbox"/> 축산물 <input type="checkbox"/> 수산물 <input type="checkbox"/> 임산물 <input type="checkbox"/> 광 물
----------------------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자원보유국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당해 사업체에 대한 조세의 면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24-0-1 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완료일의 기준

- ① 투자금액에는 해당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 ②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 시 당해 과세연도 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결제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선급금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③ 투자를 완료한 날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집행기준** 24-0-2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법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2.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집행기준

24-0-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24-21-1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및 대상 사업자

1 개요

○ R&D 설비 등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상 9개\*의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5)와 통합하여 '20.12.29.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함

- \* ① R&D설비, ② 생산성향상시설, ③ 안전설비, ④ 에너지절약시설 ⑤ 환경보전시설, ⑥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조특법§25), ⑦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25의4),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25의5), ⑨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5의7)

개 정 전	개 정 후
<p>① R&amp;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p>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하되 에너지 절약시설 및 업종별 필수자산 등은 공제적용)</li> <li>■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li> <li>■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li> </ul> <p>※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20·'21년 투자분은 종전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p>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나(조특법§24②)  
 -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대부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하거나, 투자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때마다 공제가능 하도록 하고 있음

구 분	적용기한	세액공제 방법
중소기업등 투자(제5조)	2021.12.31.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다만,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 가능
특정시설(제25조)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제25조의4)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제25조의5)	2020.12.31.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제25조의7)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② 공제대상 사업자

- 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조특령§21①)

③ 세액공제 = ① + ②

- ① 기본공제금액 : 해당연도 투자금액 × 1%(중견 5%, 중소 10%)
- ② 추가공제금액 : (해당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 3%  
단,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의 2배를 한도로 함

집행기준

24-21-2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자산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비품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공제대상 자산을 규정하였으며
  - 건물, 구축물 등의 공제제외 대상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특정시설 또는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함

집행기준

24-21-3

재화구매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산정방법

-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을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집행기준

29의7-26의7-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제'라 한다)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p>적용제외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li> <li>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li> <li>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청년 등 상시근로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li> <li>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li> <li>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li> </ul> </li> <li>「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li> <li>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li> </ol>																											
<p>세액공제액</p>	<p>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1인당 세액공제액</p> <table border="1" data-bbox="375 1624 1412 1814"> <thead> <tr> <th rowspan="2">구 분 (단위 : 만원)</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h colspan="2">중견기업</th> <th colspan="2">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수도권</th> <th>지방</th>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청년 등 상시근로자</td> <td>1,100</td> <td>1,300*</td> <td>800</td> <td>900*</td> <td>400</td> <td>500*</td> </tr> <tr> <td>그 외 상시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 colspan="2">450</td> <td colspan="2">0</td> </tr> </tbody> </table> <p>*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 2021년~2022년까지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공제 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p>	구 분 (단위 : 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	1,300*	800	900*	400	500*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0	
구 분 (단위 : 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	1,300*	800	900*	400	500*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0																							

집행기준

29의7-26의7-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수

- ① 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②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의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 1.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0
  -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다음 1), 2)에 따른다.
    -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 1) 직전 과세연도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수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한 상시근로자수
      - 2) 해당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수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수

**집행기준**

29의7-26의7-3

**고용증대세제의 사후관리**

- ① 고용증대세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함)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2) 그 밖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text{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 \text{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times (\text{「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text{같은 항 제2호의 금액}) \times \text{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text{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times \text{「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times \text{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2) 그 밖의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times (\text{「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7 제1항제1호의 금액} - \text{같은 항 제2호의 금액}) \times \text{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위 1호 및 2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집행기준** 30의5-27의5-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구 분	내 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도 포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2006.1.1.이후 증여받은 경우(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원 한도)</li> <li>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li> </ul>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li> <li>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li> </ul>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 불가</li> </ul>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 10% 적용</li> </ul>

**집행기준** 30의5-27의5-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③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④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 전과 동일한 종류일 경우
-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집행기준** 30의5-27의5-3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text{가산세액} = \text{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 \times 3/1,000$$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기한

- ①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②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③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집행기준** 30의5-27의5-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추징사유	추징대상금액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2년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추징대상금액에 대한 결정 증여세액 ×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의 기간) × 1일 22/100,000
창업자금으로 타업종을 영위	타업종 창업자금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사업과 무관하게 사용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추징사유	추징대상금액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 (가치증가분 포함)을 타용도로 사용	타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추징대상금액에 대한 결정 증여 세액 ×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의 기간) × 1일 22/100,000
창업후 10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의 사망 또는 당해 사업을 폐업·휴업	창업자금과 이로 인한 가치증가분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5년 이내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경우 *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수 - 10명)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집행기준**

30의5-27의5-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 ①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④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⑤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집행기준**

30의5-27의5-6

**창업자금에 대한 기타 과세특례**

- ① 창업자금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 ②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④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30의6-27의6-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구 분	내 용
대상	<p>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 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을 2008.1.1.이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li> <li>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li> <li>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li> </ol> <p>* 가업승계후 가업승계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상증법상 최대주주 등(가업승계 당시 해당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제외</p>
세액	<p>② ①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가.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동시 증여)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p> <p>나.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순차 증여) :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부과되는 증여세액</p>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li> </ul>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불가</li> </ul>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적용</li> </ul> <p>*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math>\frac{\text{사업무관 자산 가액}}{\text{총 자산가액}}</math>)</p>

**집행기준**

30의6-27의6-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추징**

추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li> <li>•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li> </ul>
추징대상금액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추징대상금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1일 22/100,000

**집행기준**

30의6-27의6-3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집행기준**

30의6-27의6-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④ 수증자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을 사유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⑥ 해당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⑦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기준**

30의6-27의6-5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대한 과세방법 선택**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다음의 증여이익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 ①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 ②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집행기준**

30의6-27의6-6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 ① 상증령 §15③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봄](단,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은 미적용)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집행기준**

30의6-27의6-7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기타 과세특례**

- ①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적용할 때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 ②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④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⑤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31-28-1 법인설립 후 1년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며,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1년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31-28-2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한함)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집행기준** 31-28-3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

소멸한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된 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가 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31-28-4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31-28-5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주가 통합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31-28-6 사업폐지의 범위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사업폐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집행기준** 31-28-7 주식처분의 범위

주식처분에는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출자비율에 따른 균등소각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지 않음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망 또는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5.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내국인이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집행기준** 32-29-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건설중인 자산(그에 딸린 토지 포함) 또는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기준** 32-29-2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을 의미한다.

**집행기준** 32-29-3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32-29-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전환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32-29-5 사업폐지의 범위

전환한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사업폐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집행기준

32-29-6 주식처분의 범위

주식처분에는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출자비율에 따른 균등소각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지 않음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망 또는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5.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집행기준

60-54-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

- 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 ③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휴업 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 후의 지방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이전 전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이전 후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증·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집행기준

60-56-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자	<p>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p> <p>*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하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대도시로 봄</p>
과세특례 내용	<p>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 제1항의 금액에서 제2항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항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text{과세이연금액} = \text{①} - \text{②} \times \text{③}(100\% \text{ 한도})</math> </div>
과세특례 내용	<p>①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p> <p>* 장부가액 : 당해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으로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에는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을 포함함</p> <p>②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p> <p>③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p> <p>* 증설 :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함</p> <p>2. 분할익금산입 : 과세이연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p>
적용시한	2025년 12월 31일

과세특례 요건	<p>1. 공장입지 기준면적 요건 :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배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공장입지 기준면적]</b></p> <p>1. 제조공장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p> <p>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 Max(①,②)</p> <p style="padding-left: 20px;">①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p> <p style="padding-left: 20px;">② 해당 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른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p> </div> <p>2. 이전시한</p> <p>① 선이전 후양도 :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  * 사업을 개시한 날 :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  **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후 양도하는 것을 포함</p> <p>② 선양도 후이전 :</p> <p style="padding-left: 20px;">㉠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p> <p style="padding-left: 20px;">㉡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  * 준공일의 판정기준 : 사용의 허가·인가 또는 검사 등의 완료와 관계없이 공장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 다만, 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용의 허가, 인가 또는 검사일을 준공일로 본다.</p> <p>3. 동일업종 영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p>
------------	---

**집행기준** 60-56-2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집행기준 60-56-1에서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하 “지방공장의 가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이전 후양도)
2.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한 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양도 후이전)
3. 대도시공장을 여러 개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되 일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나머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후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과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선이전 후양도, 선양도 후이전)

**집행기준** 60-56-3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①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1. 선양도 후이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2.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확정계산금액을 초과하는 때 : 그 초과금액
  - 3.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한 때 :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 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② 제1항과 같이 일시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1. 제1항에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한 법인세액과 익금불산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의 차액
  - 2.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3. 1일 10만분의 22

**집행기준** 63-60-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① 세액감면 요건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것
  -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집행기준

63-60-2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과세특례  
요건

- ① 집행기준 63-60-1 ① 가에 따른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 ② 집행기준 63-60-1 ① 나에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집행기준

63-60-3

세액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

- ① 공장이전기업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감면기간	감면세액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① 아래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 1.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구역 및 자연보전구역(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 ②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 1.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하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③ ① 또는 ②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10년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	법인세(소득세)의 100%
그 다음 2년(②1. 또는 ③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의 50%

- ② 사업연도 중에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소득과 이전 후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이전 후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 ③ 지방이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집행기준

63-60-4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 ①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집행기준 63-60-3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 ②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2

**집행기준**

63의2-60의2-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 요건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일 것
- ②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것, 단 법 제63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제12항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함
- ③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투자금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근무인원 :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 ④ 본사이전법인은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⑤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집행기준** 63의2-60의2-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다음 ①의 금액에 ②와③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 ②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③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집행기준** 63의2-60의2-3 수도권 밖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수도권 밖으로 지방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감면한다.

감면기간	감면세액
① 63-60-3 ①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	법인세의 100%
② 63-60-3 ②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	
③ ① 또는 ②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10년 2. 1.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	
그 다음 2년(②1. 또는 ③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의 50%

**집행기준** 63의2-60의2-4 이전인원비율의 계산

- ①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가목에서 나목을 뺀 인원을 말한다.
  - 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 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 ②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 ③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집행기준** 63의2-60의2-5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본사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집행기준** 63의2-60의2-6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 ①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②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2

**집행기준** 69-66-1 자경농지 감면 요건

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202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69-66-2 자경농지 감면 대상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013.2.15. 현재 비거주자인 자가 2015.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69-66-3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69-66-4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집행기준** 69-66-5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 여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집행기준** 69-66-6 직접 경작의 의미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기준** 69-66-7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 책임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집행기준** 69-66-8 자경기간 계산

구 분	자경기간계산
자경기간 계산원칙	농지 소유기간 동안 자경한 기간을 통산
환지된 농지	환지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
증여받은 농지	수증일 이후 수증자가 자경한 기간
교환 <sup>1)</sup> 으로 취득한 농지	교환일 이후 자경한 기간
환매로 취득한 농지	환매취득일부터 자경한 기간
휴경기간이 있는 농지	휴경기간은 제외

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소법 §89), 대토(조특법 §70)로 취득한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

**집행기준** 69-66-9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 또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제조업 등 : 1.5억

**집행기준** 69-66-10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6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까지)이 소유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말한다.

**집행기준** 69-66-11 휴경농지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된다.

**집행기준** 69-66-12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69-66-13 피상속인이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10.2.17. 이전 양도시**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 상속인의 자경기간

**2010.2.18. 이후 양도시**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 상속인의 자경기간
- 피상속인이 배우자<sup>1)</sup>가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재차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자경기간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 상속인의 자경기간  
 1)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사례**

- 2002년 3월 : 父 농지 취득하여 재촌 자경함
  - 2007년 8월 : 父 사망으로 母 상속받아 재촌 자경함
  - 2009년12월 : 母 사망으로 子 상속받아 재촌 자경함
  - 2010년12월 : 자경농지 양도함
- ☞ 자경기간 계산 : 8년 9개월 [ 父(5년 5개월) + 母(2년 4개월) + 자(1년)]

**집행기준**

69-66-14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상속개시일		자경기간 계산
2006.2.8. 이전	2008.12.31. 까지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2006.2.8. 이전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속일부터 3년 내에 지정된 경우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2009.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li> <li>상속일부터 3년 이후에 지정된 경우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하지 않음</li> </ul>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12.31.까지 양도시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li> <li>2009.1.1.이후 양도시 :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li> </ul>
2006.2.9. 이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내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2009.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집행기준**

69-66-15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특례**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자경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 임대주택단지에정지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5.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7.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 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집행기준**

69-66-16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자경기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69-66-17

경작행위 금지 요청을 받은 경우

거주자의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행위 금지 협조요청을 받고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69-66-18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집행기준**

69-66-19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과 해당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사례**

- 2002년 3월 : A농지 취득하여 재촌 자경
  - 2008년 8월 : A농지 양도, 대토감면
  - 2008년10월 : B농지 취득하여 재촌 자경
  - 2010년12월 : B농지 수용
- ☞ 자경기간 계산 : 8년 7개월(= A농지 6년 5개월 + B농지 2년 2개월)

**집행기준**

69-66-20

농지의 범위

양도일 현재 농지는 논·밭·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집행기준** 69-66-21 농지의 판정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집행기준** 69-66-2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 배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감면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를 감면 배제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기준** 69-66-23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지역구분		편입(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3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취득일부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감면	감면배제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감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 및 보상지연지역		감면
	위 외의 기타지역		감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감면배제

\*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등을 당시에 소유한 자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 적용 대상 ('01.1.29.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 기재부 재산세제과-245, 2022.2.15.)

**집행기준**

69-66-24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지역구분		편입(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3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감면배제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좌동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및 보상지연 지역		좌동
	위 외의 기타지역		좌동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감면배제

\*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경과한 농지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2013.2.15.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69-66-25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집행기준**

69-66-26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세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69-66-27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집행기준**

69-66-28

휴경상태의 농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여부에 불문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다.

**집행기준** 69-66-29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적용은 가능하다.

**집행기준** 69-66-30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액 개정 연혁

과세기간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1996년~2001년	3억원
2002년~2003년	2억원
2004년~2005년	1억원
2006년~2007년	1억원 (5년간 1억원) (자경농지감면과 농지의 대토감면금액을 합산)
2008년 이후	2억원 (5년간 3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만 추가로 2억원 확대)
2016년 이후	1억원(5년간 3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으로서 2015.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2억원 적용)
2018년 이후	1억원(5년간 2억원) 2017.12.31.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1/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5년간 3억) 적용

**집행기준** 69의2-66의2-1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방의 명의로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집행기준** 69의3-66의3-1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대상자의 요건(①+②)	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② 어업용 토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거주자
어업용 토지 등의 범위	• 육상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li> <li>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li> </ul>
감면율	100%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적용기한	2025.12.31.

\* 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69의4-66의4-1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자의 요건(①+②)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인 ② 산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거주자	
산지의 범위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li> <li>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li> </ul>	
감면율	<b>자경 기간</b>	<b>감면율</b>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2018.1.1.이후 산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70-67-1 2010.1.1. 이후 농지 대토(양도)시 감면배제되는 농지의 범위

지역구분	편입(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3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취득일부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감면배제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좌동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및 보상지연 지역		좌동

지역구분		편입(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3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위 외의 기타지역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좌동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모든 토지		감면배제

- \* 2009.12.31.이전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토한 경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 가능함
- \*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경과한 농지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2013.2.15.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70-67-2 2014.7.1. 이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구 분	감면요건
종전농지 거주·경작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li> <li>• 농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 (근로소득 등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li> </ul>
신규농지 취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sup>1)</sup> 내에 신규 농지 취득<sup>2)</sup>(선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 양도)</li> <li>• 신규농지 취득일(선 취득시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경작 개시</li> </ul>
신규농지 거주·경작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농지 소재지와 신규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일 것 (근로소득 등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li> </ul>
신규농지 면적·가액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li> <li>•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2 이상</li> </ul>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 2014.6.30. 이전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20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14.7.1. 이후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신규농지 통산 8년 경작 및 신규농지 3,700만원 소득 이상자 경작 불인정 규정은 적용함
- 1) 2007.2.28.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년 내
- 2) 취득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는 제외

**집행기준** 70-67-3 2014.6.30. 이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구 분	감면요건
종전농지 거주·경작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li> </ul>
신규농지 취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농지 취득*(선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 양도)</li> </ul>

구 분	감면요건
신규농지 거주·경작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신규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li> </ul>
신규농지 면적·가액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li> <li>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3 이상</li> </ul>

\* 취득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는 제외

**집행기준** 70-67-4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수용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70-67-5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상속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집행기준** 70-67-6 개간한 농지의 대토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의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집행기준** 70-67-7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하는 경우

농지대토는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위탁 경영·대리경작·임대차 중인 농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70-67-8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70-67-9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필지별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집행기준** 70-67-10 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일부 분할양도하거나, 분할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대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집행기준** 70-67-11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4년 미만 자경한 상태에서 다시 대토되는 경우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대토되는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집행기준** 70-67-12 농지 대토의 감면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의 납부

농지대토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감면을 적용받고 이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2014.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미충족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 신규농지 미취득하거나, 신규농지의 가액·면적요건 미충족</li> <li>• 신규농지의 경작개시 요건 미충족</li> <li>• 종전농지와 신규농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li> <li>• 종전농지와 신규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소득(농업, 임업소득 등 제외)과 총급여 합계 3,700만원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li> </ul>
납부금액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납부금액 × (종전농지 양도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양도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 1일 22/100,000 <sup>1)</sup> (2022.2.15.이후분)

1) 1일 3/10,000(2019.2.11.이전분), 1일 25/100,000(2019.2.12.~2022.2.14.)

**집행기준** 70의2-67의2-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차 환매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농업인이 최초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하기 전 당해 농지를 취득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동 취득한 날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집행기준** 71-68-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구 분	내 용
대상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한 경우
감면한도	•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5년간 합산하여 1억원 한도)
기타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li> <li>•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 및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li> </ul>

**집행기준** 71-68-2 영농자녀에 대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축사용지·어선·어업권·어업용토지 및 염전등과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등에 소재하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구 분	내 용
농지	•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40,000㎡ 이내의 것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및 산림보호구역 포함)로서 297,000㎡ 이내의 것 •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이내의 것
축사 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어선	• 20t 미만의 어선
어업권	• 100,000㎡ 이내의 것
어업용 통지등	• 40,000㎡ 이내의 것
염전	•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0,000㎡ 이내의 것

**집행기준** 71-68-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자경농민	다음 ① 과 ②를 모두 갖춘 자 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②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영농자녀	다음 ① 과 ②를 모두 갖춘 자 ①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직계비속일 것 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집행기준** 71-68-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추징사유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추징대상금액	감면받은 증여세액 및 이자상당액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 × 감면받은 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22/100,000

집행기준

71-68-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배제사유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 ③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 ④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 ⑤ 농지를 교환·분합·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 ⑥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 ⑦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⑧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 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집행기준

77-72-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

- ① 2년이상 보유한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를 시행예정자에게 2010년~2015년까지 양도
- ② 양도소득세 당초신고를 한 경우 일 것(양도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당초신고시 감면세액 없음)
- ③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행자로 지정될 것(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에 감면신청, 감면율은 당초 양도당시의 감면율 적용)

**집행기준** 77-72-2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일반매매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일반 매매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약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6.29.)

**집행기준** 77-72-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연혁

적용시기	감면율
'02. 1. 1. ~ '06.12.31.	채권 : 10%
'07. 1. 1. ~ '07. 7. 5.	현금 : 10%, 채권 : 15%
'07. 7. 6. ~ '08.12.31.	현금 : 10%, 채권 : 15%, 만기보상채권 : 20%
'09. 1. 1. ~ '09.12.31.	현금 : 20%, 채권 : 25%, 만기보상채권 : 30%
2010. 1. 1. 이후	현금 : 20%, 일반채권 : 2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만기보상채권 (3년이상 : 40%, 5년이상 : 50%)
2014.1.1. 이후	현금 : 15%, 일반채권 :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만기보상채권 (3년이상 : 30%, 5년이상 : 40%)
2016.1.1. 이후	현금 : 10% <sup>1)</sup> , 일반채권 : 15% <sup>1)</sup>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만기보상채권 <sup>2)</sup> (3년이상 : 30%, 5년이상 : 40%)

- 1) 2015.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12.31.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사업시행자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기준** 77-72-4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은 2억원이 적용된다.

\* 17.12.31. 이전 양도분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2억원)적용은 10% 또는 15% 감면율이 적용되는 현금 및 일반채권의 경우에 적용하며, 30 또는 40% 감면율이 적용되는 만기보상채권이 경우에는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 적용되었으나, '2018.1.1.이후 양도분부터 5년간 2억원으로 감면한도액 일원화됨

**집행기준** 77의2-73-1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방법

과세이연금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대토보상액이 총 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사례**

2010.03. 수용 : 10억 보상(현금보상 6억, 대토보상 4억), 필요경비 : 4억, 보유기간 : 10년 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현금보상(과세대상)	대토보상(과세이연)
양도가액	1,000	600	400
필요경비	400	240	160
양도차익	600	360	240
장기보유공제	180	108	72
양도소득금액	420	252	168 (과세이연금액)

☞ 보상금 중 일부를 대토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총 보상가액)에서 대토보상가액을 빼고 계산

**집행기준** 77의2-73-2 대토한 토지의 양도시 과세방법

대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대토한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대토한 토지의 취득일부 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집행기준** 77의3-74-1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요건

구 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건물	
	40% 감면	25% 감면	40% 감면	25% 감면
취득일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 양도일부 터 20년 이전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 사업인정고시일부 터 20년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	-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 터 1년 이내	
거주지	• 취득일부 터 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건물 소재지 거주			

**집행기준** 77의3-74-2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등을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해 양도한 경우 종중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집행기준** 85의7-79의8-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 지역의 범위

공익사업시행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익 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 지역**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3.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집행기준** 85의7-79의8-2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집행기준** 85의7-79의8-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은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접 그 공장에서 2년 이상을 가동한 경우를 말한다.

**집행기준** 87-0-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주택보유요건

-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 주택을 포함한다.
-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1주택을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공동소유주택의 주택가격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소유지분별로 안분하지 않는다.

- 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가입요건 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⑥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한다.

**집행기준** 87-0-2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배제 관련 사례

-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함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당해 거주자가 본인소유의 주택(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 주택을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③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를 하고 다른 펀드로 가입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97-97-1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임대구분	임대기간	적용요건	감면율
일반 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자가 2000.12.31.이전에 아래 기간에 신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	50%
	10년 이상		100%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① '86.1.1~'00.12.31. 기간 중 신축주택 ② '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100%
임대주택법의 매입임대주택	5년 이상	'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국민주택으로서 5호이상의 주택(취득 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100%

**집행기준** 97-97-2 감면대상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7-97-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97-97-4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의 임대 주택 수 계산방법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예 :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이 50%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이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97-97-5 임대기간 계산방법

구 분	임대기간 계산방법
원칙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를 개시한 날 단, 5호 미만 주택의 임대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음.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 • 3개월 이내 : 주택임대기간에 산입 • 3개월 초과 :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주택임대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이혼의 경우	• 재산분할 : 전 배우자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 • 위 자 료 : 전 배우자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집행기준** 97-97-6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임대기간 계산

임대 중이던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의 변동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집행기준** 97-97-7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97-97-8 임대기간 중에 자가거주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를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호에 “자가 거주”하다 2000.12.31. 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 2023.1.30.)

**집행기준** 97의2-97의2-1 신축임대주택의 취득 요건

구 분	취득요건
건설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8.20.~2001.12.31. 기간 중 신축주택</li> <li>• 1999.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li> </ul>
매입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8.20.이후 신축주택</li> <li>• 1999.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을 1999.8.20.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한 주택(1999.8.20.~2001.12.31. 기간 중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 한함)</li> </ul>

**집행기준** 97의2-97의2-2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집행기준 97의2-97의2-1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 후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집행기준** 97의2-97의2-3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갖춘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7의2-97의2-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97의2-97의2-5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신축임대주택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97의2-97의2-6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203호, 303호)를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204호, 304호)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분할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집행기준** 97의2-97의2-7 신축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축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부분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1.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 감면내용 비교】**

구 분	장기임대주택(조특법 §97)	신축임대주택(조특법 §97의2)
대상주택	① 일반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6.1.1.~'00.12.31. 기간중 신축주택</li> <li>• '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86.1.1.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li> </ul> ② 매입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1.1.이후 취득 및 임대개시 (취득당시 미입주 주택)</li> </ul>	①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8.20.~'01.12.31. 기간중 신축주택</li> <li>• '99.8.19.이전 신축주택으로 '99.8.20.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li> </ul> ②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99.8.20.~'01.12.31.기간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 및 임대개시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8.20.이후 신축주택으로 취득시 미입주 주택</li> <li>• '99.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99.8.20.현재 미입주 주택</li> </ul>

구 분	장기임대주택(조특법 §97)	신축임대주택(조특법 §97의2)
감면요건	2000.12.3.1. 이전에 신축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임대주택 양도	1호 이상 신축국민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신축임대주택 양도
감면내용	① 일반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 50% 감면</li> <li>• 10년 이상 임대후 양도 ⇨ 면제</li> </ul> ②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 면제</li> </ul> ③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 면제</li> </ul>	① 신축감면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 면제</li> </ul> ② 일반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 일반과세</li> </ul>
공통사항	① 감면대상자 : 거주자 ②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 이하 ③ 감면되는 주택에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딸린 토지를 포함 ④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 ⑤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⑥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해당 임대주택은 중과 배제됨	

**집행기준** 97의2-97의2-8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집행기준** 97의3-97의3-1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 토지 제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7, 2023.12.27.)

**집행기준** 97의4-0-1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율

임대기간	추가 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집행기준** 97의4-97의4-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6년 이상 임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2014.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임대기간 계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li> <li>•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li> <li>•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li> <li>•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산입</li> </ul>

**집행기준** 98-98-1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과세특례 요건 및 내용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8)	취득시기	아래 ①·②의 기간까지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① '95.10.31.현재 미분양주택을 '95.11.1.~'97.12.31. 취득 ② '98.2.28.현재 미분양주택을 '98.3.1.~'98.12.31. 취득
	미분양 주택의 요건	아래 ①·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국민주택 ①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서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②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미입주)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8)	특례대상	해당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특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세(20%)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중 선택 적용 가능</li> <li>•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함</li> </ul>

**집행기준** 98-98-2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해당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집행기준** 98의3-98의3-1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인천 및 경기 14개 시(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1. 서울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등 제외)
3. 경기 14개 시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원특수지역 제외))

**집행기준** 98의3-98의3-2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의 의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한다.

**집행기준** 98의3-98의3-3 주택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2)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8의3-98의3-4 토지를 보유하던 중에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8의3-98의3-5 주택법에 따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된다.

사례

- 주택재개발사업('06년 7월 사업승인, '07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 '07년 11월 분양승인)에 의해 분양개시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
693	297	336	60

- 조합원 중 38세대가 분양계약 포기(2008.4월)하여 현금 청산함
- 위 38세대에 대해 2009.12월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분양하였으며, 그 중 28세대가 2010.2.11.까지 분양됨

☞ 추가 분양된 28세대의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됨

참고 1. 【미분양주택의 범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주택의 범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신규분양주택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 및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2009.2.1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 포함)

3.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

4.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6.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3.30. 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 2.1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해당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참고 2.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3.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4.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5.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6.	2009.2.11. 이전에 계약한 주택
7.	2009.2.12.~2010.2.11.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8.	2009.2.12.~2010.2.11.까지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준공되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 하는 경우
9.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

참고 3.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8조의 2)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8조의 3)
적용 범위	대상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거주자 및 비거주자
	지역	수도권 밖	서울특별시 밖(지정지역 제외)
취득요건 (매매계약·계약금납부)		2008.11.3.~2010.12.31.	거 주 자 : 2009.2.12.~2010.2.11. 비거주자 : 2009.3.16.~2010.2.11.
과세특례 대상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11.3. 현재 미분양주택</li> <li>2008.11.3.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사업 주체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취득하는 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li> <li>2009.2.12.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주체자가 분양하는 주택(2009.2.12. 이후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li> <li>2009.2.12. 현재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 계획승인 등을 받아 자기가 건설한 신축 주택 등</li> </ul>
감면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율 적용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적용</li> <li>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판정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내 양도 ⇨ 100% 면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0% 감면)</li> <li>5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sup>1)</sup>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li> <li>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 60%</li> </ul>

구 분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8조의 2)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8조의 3)
감면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li> <li>• 세율 : 누진세율</li> <li>•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판정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li> <li>•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li> </ul>

**집행기준** 99-99-1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현재의 고가(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현재의 고가(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집행기준** 99-99-2 다가구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해당 여부

신축주택 감면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기준** 99-99-3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

(신규 취득)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취득)	$\text{양도소득 금액} \times \frac{\text{양도 당시 기준시가} - \text{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text{양도 당시 기준시가} - \text{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집행기준** 99-99-4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소득금액 계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

(신규 취득)	$\text{양도소득 금액} \times \frac{\text{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 \text{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text{양도 당시 기준시가} - \text{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취득)	$\text{양도소득 금액} \times \frac{\text{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 \text{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text{양도 당시 기준시가} - \text{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사례**

- 2001.11.10. : 신축주택 분양(최초)
- 2002. 4.29. : 신축주택 취득일(기준시가 160백만원)
- 2007. 4.28.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기준시가 280백만원)
- 2008.10.13. : 양도 (기준시가 320백만원, 양도소득금액 250백만원)

☞ 감면소득금액 : 187,500천원

$$187,500\text{천원} = 250\text{백만원} \times (280\text{백만원} - 160\text{백만원}) / (320\text{백만원} - 160\text{백만원})$$

**집행기준**

99-99-5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2013.1.1. 「소득세법」 §90②신설)

**집행기준**

99-99-6

**준공된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준공된 신축주택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비교】**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 대상자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	
취득 기간	① 일반주택 : '98.5.22.~'99.6.30. ② 국민주택 : '98.5.22.~'99.12.31.	① 수도권외의 지역 소재 국민주택 '00.11.1.~'01.12.31. ② 서울·과천·5대 신도시 일반주택 '01.5.23.~'02.12.31. ③ 전국 모든 주택 (②호지역 제외) '01.5.23.~'03.6.30.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 대상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자기가 건설 한 주택에는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li> <li>•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 (미입주)한 주택</li> <li>②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li> <li>③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 한함.</li> </ol> </li> </ul>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양도소득세 면제</li> <li>• 취득일부터 5년 경과후 양도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li> </ul>	
적용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7.1. 양도분부터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외의 지역 소재 국민주택 '0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li> <li>• 전국 모든 주택(서울·과천 등 포함) '01.8.14.이후 양도분부터 적용</li> </ul>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감면되며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과세</li> <li>• 신축주택에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li> <li>•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li> <li>• 신축주택 양도시 다주택 증과세율 적용 배제</li> </ul>	

**집행기준** 99의2-99의2-1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구분	과세특례 요건 및 내용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9의2)	취득기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4.1.~2013.12.31.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 등
	과세특례 대상주택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의 주택
	특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100% 감면(5년이 경과후 양도한 경우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에서 차감)</li> <li>•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li> </ul>

**참고 1.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의 범위**

1.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3.31.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4.1.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신규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13.4.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
3. 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4.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자가건설주택  
2013.4.1.부터 2013.12.31.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
9. 오피스텔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사업자가 공급하는 오피스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

**참고 2. 【1세대1주택자의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은 아래와 같으며 주택에 부수되지 토지(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안 5배, 도시지역 밖 10배를 곱한 면적 이내)포함하며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1세대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 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종전주택(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주택임)

**참고 3.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제거래가액(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이 6억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li> <li>2. 2013.3.31.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3.4.1. 이후 해제된 주택</li> <li>3. 계약자가 2013.3.31.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4.1.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를 포함)</li> <li>4. 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li> <li>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오피스텔</li> </ol>

**참고 4. 【1세대1주택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세대1주택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제거래가액(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이 6억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li> <li>2. 계약자가 2013.3.31.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4.1.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를 포함)</li> <li>3. 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li> <li>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오피스텔</li> </ol>

**집행기준** 99의2-99의2-2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

거주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하던 중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이를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해당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99의2-99의2-3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 취득일(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축·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후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나머지 본인 소유 지분 1/2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4

조특법§99의2 적용대상 분양권을 상속받는 경우  
과세특례 승계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 2021.12.23.). 다만, 피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5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시 주민등록기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99의2-99의2-6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99의2-99의2-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8

현지이민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민등록법 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9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주택 양도시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집행기준**

99의2-99의2-10

무허가·미등기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외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이 미등기·무허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11

경락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각허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99의2-99의2-12

1세대1주택 확인 신청기한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3.31.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13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제출기한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는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4.30.까지 전자매체로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기준** 99의2-99의2-14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99의4-99의4-1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동일한 날에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93, 2023.9.15.)

**집행기준** 99의4-99의4-2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한 경우의 의미

잔금청산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2003.8.1.~2025.12.31. 기간 내인 경우로서 농어촌 주택 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해당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기준** 99의4-99의4-3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의 증축, 딸린 토지의 추가 취득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구 분	적용방법
취득시기 요건	증축이나 주택에 딸린 토지 등의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보유여부 판단.
규모·가액요건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증축 또는 추가된 토지가액 등을 포함하여 농어촌주택의 규모 및 가액요건을 판단.
지역기준 요건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집행기준** 99의4-99의4-4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2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 산정방법

- 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법인은 투자포함 방식(A)과 투자제외 방식(B)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 또는 초과환류소득(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뺀 금액)을 산정한다.

투자포함 방식(A)	투자제외 방식(B)
$\text{기업소득} \times 70\% - (\text{투자} + \text{임금증가} + \text{상생협력비용} \times 3)$	$\text{기업소득} \times 15\% - (\text{임금증가} + \text{상생협력비용} \times 3)$
[기업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	
가산항목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투자포함 방식만 해당) 등
차감항목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 등

[투자] 기계장치 등 일정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 임원, 고액연봉자(8천만원 이상),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상생협력비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 ② 투자포함 방식(A)과 투자제외 방식(B)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투자포함방식(A)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투자제외방식(B)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②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 ④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⑤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 ⑥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 ⑧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
- ⑨ 삭제
-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중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Chapter

## 제3장 간접국세

### 집행기준 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 ①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와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제외)하는 석유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사업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5-0-4 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 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율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5-0-5 영세율 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 Built - Transfer - Operate)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BTL : Built - Transfer - Lease)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OT : Built - Operate - Transfer)

**집행기준** 105-0-6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특수정보통신기기,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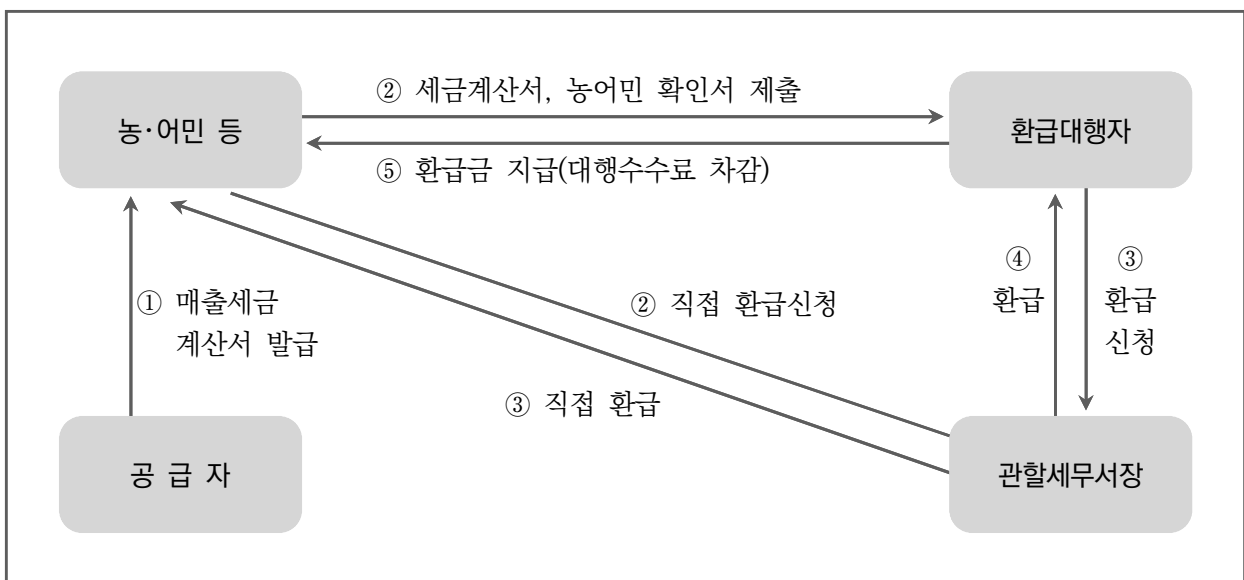
**집행기준** 105-0-7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며, 이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한다.
- ②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농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에 있어 농민의 범위는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④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를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한 후 해당 농민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재의 제조업자가 해당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집행기준** 105의2-0-1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집행기준**

105의2-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①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인 농민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해당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농·어민이 사후환급 신청기한 경과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06-0-1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은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준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 ③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해당 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④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해당 공급자의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집행기준**

106-0-2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 ①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② 다가구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집행기준** 106-0-3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집행기준** 106-0-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료로 한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집행기준** 106-0-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부분 공중 및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부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②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에서 특별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단순히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집행기준** 106-0-6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집행기준** 106-0-7 사회기반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집행기준**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
  2.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3.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것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 ② 제1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③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
  2.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3.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용역
  4. 도·소매업자가 국민주택의 공급자 또는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집행기준**

106-106-2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② 제1항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점포와 다가구주택의 대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집행기준**

106-106-3

**영세율 및 면세 붙임서류**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붙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공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집행기준** 106의2-0-1 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아래의 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2026.12.31.까지 면세)

가. 다음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 나잠(맨몸으로 잠수)어업인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
-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김·가시파래·오징어 건조시설, 멸치·미역·다시마·툰, 해삼 및 새우의 자숙·건조시설, 패류 자숙시설, 축제식양식 어업용 시설, 육상해수양식어업용 시설,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 선박
- ㉤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농업기계·임업기계·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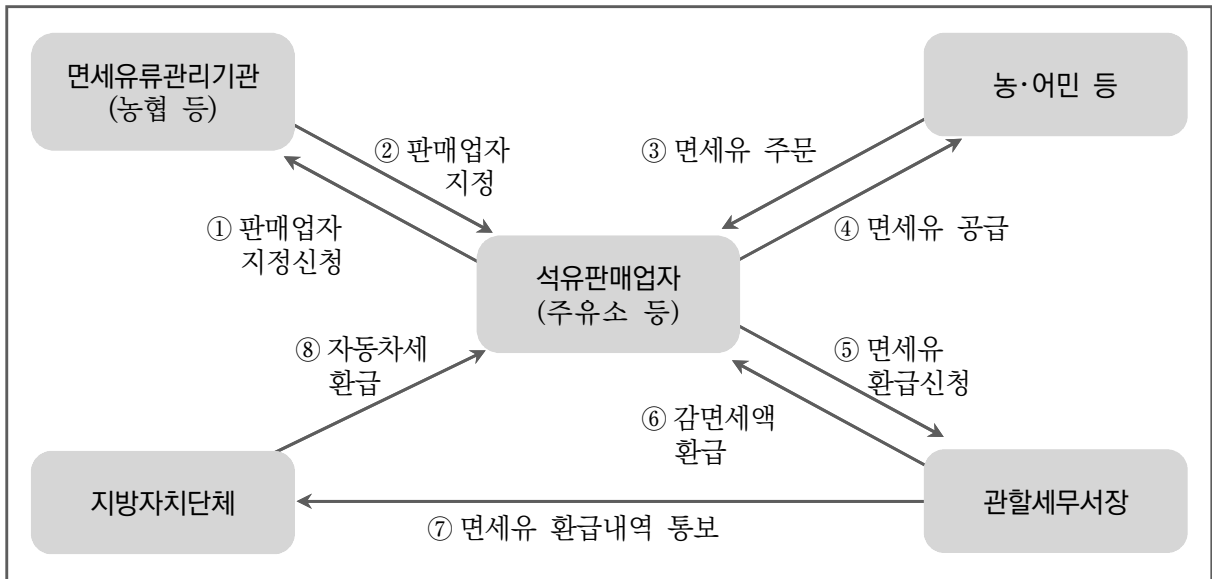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25.12.31.까지 면세)

**집행기준** 106의2-0-2 면세유 공급업자의 고정자산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

면세유 공급업자가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06의2-0-3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다음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제조자
- ② 지정된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여 해당 석유류가 면세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06의4-106의9-1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 ①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과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및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이하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집행기준

106의4-106의9-2

금 관련 제품의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 ①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6조,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 / 10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③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집행기준

106의4-106의9-3

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

- ①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보류하지 아니한다.
  - 1. 환급받을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기준**

**106의9-106의13-1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

- ① 다음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 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②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 등의 가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 ④ 스크랩 등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동 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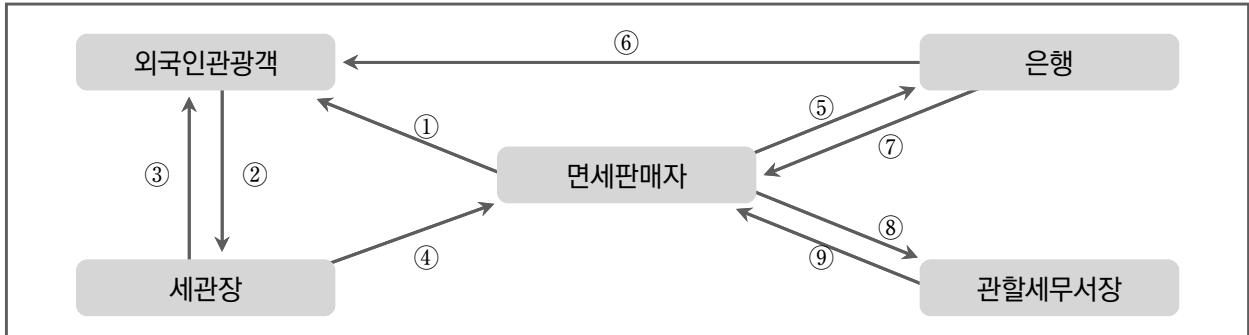
**106의9-106의13-2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 ①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 / 10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③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집행기준

107-0-1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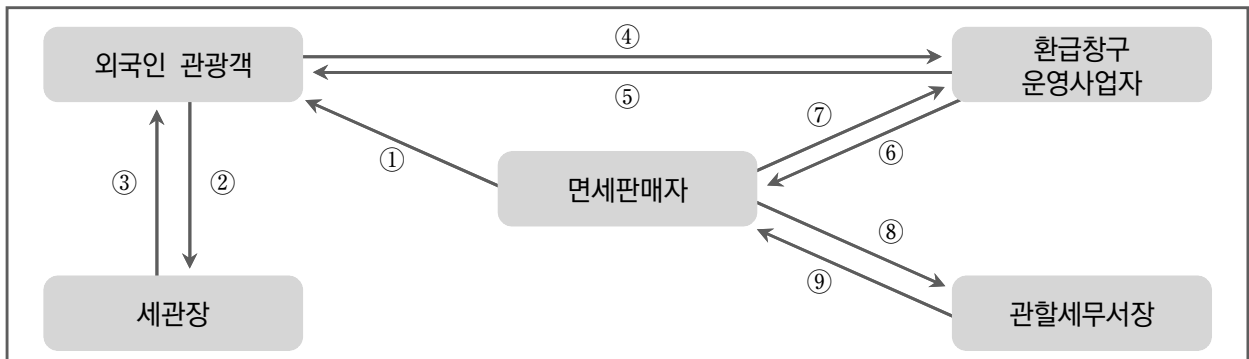


- ①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자는 면세대상 재화를 외국인관광객 등(「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포함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면세물품판매확인서 2부, 반송용 봉투 및 송금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급한다.
-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출국할 때 세관장에게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물품판매확인서 1부를 제출한다.
- ③ 세관장은 면세물품 등을 확인하고 구입자보관용 물품판매확인서를 발급한다.
- ④ 세관장은 날인한 물품판매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우송한다.
- ⑤ 면세판매자는 물품판매확인서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거래은행에 송금신청
- ⑥,⑦ 거래은행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하고 송금증명서를 면세판매자에게 발급한다.
- ⑧,⑨ 면세판매자는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환급)한다.

집행기준

107-0-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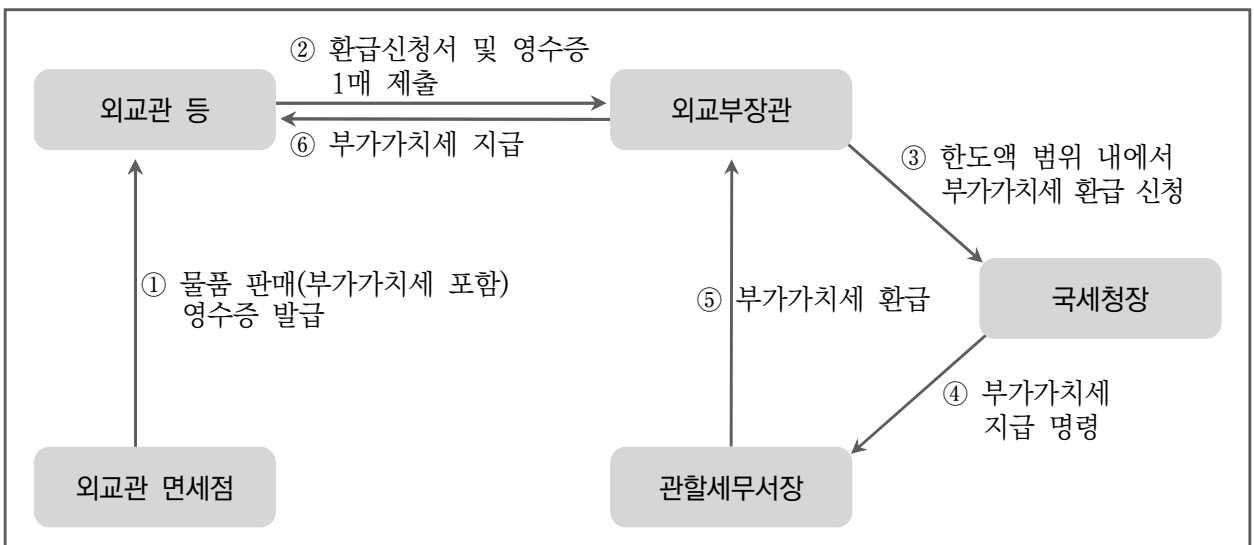
-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대상 재화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하면서 물품판매확인서 2부를 발급한다.
- ②,③ 외국인관광객 등은 세관장에게 구입물품 및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이를 확인받는다.
- ④,⑤ 외국인관광객 등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시하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다.
- ⑥,⑦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송부하고,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한 세액상당액(송금에 따른 제 비용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⑧,⑨ 면세판매자는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환급)한다.

**집행기준** 107-108-1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이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교관면세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② 해당 외교관 등에 대한 환급규정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소속직원과의 거래분으로 영수증 발급대상이어서 규정의 실익있음

**집행기준** 107-108-2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 ①,② 외교관 등이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④ 외교부장관은 외교관 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할 수 있는 한도 금액 내에서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⑤,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외교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외교관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집행기준**

108-110-1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면세 겸영사업자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 취득가액 × 3/103(2014.1.1.부터 2015.12.31.까지 5/105)
  - 2.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 취득가액 × 10/110(2015.1.1.부터 2017.12.31.까지는 9/109)
- ②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text{매입세액 공제한도} = \frac{\text{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과세표준}}{\text{재활용폐자원 과세표준}} \times \frac{80^*}{100} - \text{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가액}$$

\* 2007.12.31.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90을 적용

- ③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업자를 말한다.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4.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 포함)
  - 5.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집행기준** 108-110-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8-110-3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 제외)를 말한다.

1.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 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가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간이과세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제외)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

**집행기준** 108-110-4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Chapter

제4장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

121의2-0-1 조세감면 신청 등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 ②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 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집행기준

121의2-0-2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허용하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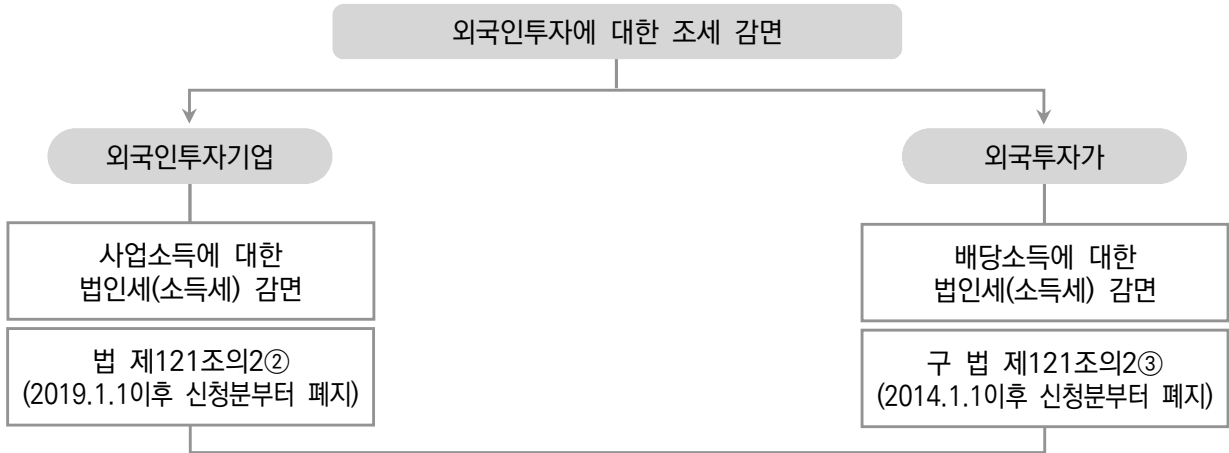
121의2-0-3 조세감면결정의 효력 상실

- ① 외국인투자의 신고 후 조세감면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②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를 안하는 경우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121의2-116의2-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감면대상 사업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법 §121의2①1호)
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 등 입주기업 중 위원회심의를 거친 대규모 사업 (법 §121의2①2호)
3. 경제자유구역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121의2①2의2호)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121의2①2의3호)
5.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121의2①2의4호)
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121의2①2의5호)
7.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121의2①2의6호)
8.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 (법 §121의2①2의7호)
9.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121의2①2의8호)
10. 새만금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121의2①2의9호)
11.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법 §121의2①3호)

감면율	- 위 1, 2의 사업 · 최초 5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감면 - 위 3, 4, 5, 6, 7, 8, 9, 10, 11의 사업 · 최초 3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감면
감면기산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감면신청기한	· 신규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변경신청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집행기준

121의2-116의2-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구 분	투자요건 등	법인세·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121의2①1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li> </ul>	<p>신성장·원천기술 등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고 외국인투자 금액이 2백만달러 이상일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121의2①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 기업 및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으로서 동 위원회 심의·의결 거치는 사업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입주기업으로 감면</li> </ul>	<table border="0"> <tr> <td>제조업</td> <td>3천만불 이상</td> </tr> <tr> <td>관광업</td> <td>2천만불 이상</td> </tr> <tr> <td>물류업</td> <td>1천만불 이상</td> </tr> <tr> <td>SOC</td> <td>1천만불 이상</td> </tr> <tr> <td>R&amp;D</td> <td>2백만불 이상</td> </tr> <tr> <td>공동사업</td> <td>3천만불 이상</td> </tr> </table>	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SOC	1천만불 이상	R&D	2백만불 이상	공동사업	3천만불 이상	<p>7년간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5년간 100% 감면</li> <li>- 다음 2년간 50% 감면</li> </ul>		
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SOC	1천만불 이상															
R&D	2백만불 이상															
공동사업	3천만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121의2①2호의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li> <li>(법 §121의2①2호의8) 새만금사업 입주기업(「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li> </ul>	<table border="0"> <tr> <td>제조업</td> <td>1천만불 이상</td> </tr> <tr> <td>관광업</td> <td>1천만불 이상</td> </tr> <tr> <td>물류업</td> <td>5백만불 이상</td> </tr> <tr> <td>의료기관</td> <td>5백만불 이상</td> </tr> <tr> <td></td> <td>(2호의2만 적용)</td> </tr> <tr> <td>R&amp;D</td> <td>1백만불 이상</td> </tr> <tr> <td>사업서비스업</td> <td>1천만불 이상</td> </tr> </table>	제조업	1천만불 이상	관광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2호의2만 적용)	R&D	1백만불 이상	사업서비스업	1천만불 이상	
제조업	1천만불 이상															
관광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2호의2만 적용)															
R&D	1백만불 이상															
사업서비스업	1천만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121의2①2호의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li> <li>(법 §121의2①2호의9) 새만금사업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li> </ul>	<p>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및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p>	<p>5년간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3년간 100% 감면</li> <li>- 다음 2년간 50%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121의2①2호의4)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li> </ul>	<p>1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및 총개발사업비가 1억불 이상인 경우</p>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구 분	투자요건 등	법인세·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121의2①2호의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li> </ul>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5년간 감면 - 최초 3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121의2①2호의6)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2호)</li> </ul>	제조업 등 1천만불 이상 관광업 등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R&D 2백만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121의2①2호의7)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제2호)</li> </ul>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및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121의2①3호)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li> </ul>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집행기준** 121의2-116의2-3 감면세액의 계산

① 2018.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아래의 감면대상세액에 감면율(100% 또는 50%, 법§121의2②)을 적용한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세액 = 해당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외국인투자비율\*\*\*

\* 해당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총산출세액 ×  $\frac{\text{감면대상소득}^{**}}{\text{총과세표준}}$

\*\* 감면대상사업(법§121의2①)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 신성장기술을 활용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법§121의2①(1)) 해당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이 8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봄

\*\*\* 외국인투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3항)

②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 제외)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전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집행기준** 121의2-116의2-4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기간 단축

법 §121의2①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비교

구 분	일반적인 경우	사업양수 방식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감면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3년간 50%, 그 다음 2년간 30%

**집행기준** 121의2-116의2-5 조세감면의 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1의2 ② 및 ⑫(1))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 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한도 (① + ②)	
① 투자금액기준	가. 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나. 법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제3호 및 제12항 제1호의 경우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② 고용기준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 Min(가, 나) 가. (i) 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ii) 법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제3호 및 제12항 제1호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나. (i)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ii)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i)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iii)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i)에 따른 졸업생 수 - (ii)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미포함(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0, 2022.06.16.)

※ 외국인투자누계액(영§116의2②) : 납입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감자차익 - 감자차손)\*  
 \* 외국인투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한함

집행기준

121의2-116의4-1

사업개시일의 신고 등

- ①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 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확인한다.
- ④ 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기준

121의4-116의6-1

증자의 조세감면

- 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의 경우(법 §121의2 및 §121의3)를 준용한다.
- ② 다음의 주식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 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 ③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 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 ④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text{감면 대상세액} \times \frac{\text{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text{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 일정한 사유 (㉓ + ㉔)

- ㉓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증자전감면사업(집행기준 121의 2-116의2-1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증자분감면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 ㉔ (증자전감면사업의 자산 재사용)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중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⑥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121의4-116의6-2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 적용시 구분경리**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121의4-116의6-3 우선주발행시 감면비율의 계산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동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한다.

**집행기준** 121의5-0-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아래 추징대상세액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 이자상당액 = 감면세액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감면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 0.022%(단, 2022.2.15.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0.025%을 적용, 2019.2.12.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0.03%)

추징사유	추징대상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li> <li>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li> </ul>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조세감면기준이란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요건, 상시고용인원요건 등을 말함</li> </ul>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ul>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li> </ul>	주식 등의 양도일부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 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li> </ul>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집행기준** 121의5-0-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 조세추징사유가 다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②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④ 「외국인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 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 ⑤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집행기준 121의5-116의10-1)

**집행기준**

121의5-0-3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감액세액 추징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 인적 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전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과 일부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존속법인에게 승계한 경우로서

분할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21의5-116의10-1

감면세액 추징 면제 시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신성장 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②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③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⑥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Chapter

##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집행기준 126의2-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②+③+④+⑤-⑥+⑦)에 해당하는 금액(2024년 사용분)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등사용금액)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등사용금액) × 4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등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등사용금액) × 30%
④	직불카드등사용분* × 30%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등 사용금액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①, ②, ③ 포함된 금액 제외,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② 포함된 금액 제외
⑤	신용카드사용분* × 15%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등 사용분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나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등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⑦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 등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 등 사용분) ×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40%
⑦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분 연간합계액 - (2023년 신용카드등 사용분 연간합계액 × 105%)] × 10%(연간 100만원 한도)

집행기준

126의2-0-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비정상적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 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과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일반기부금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명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126의2-0-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공제의 중복적용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정보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sup>*1</sup>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 가능

**집행기준** 126의3-0-1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집행기준** 126의3-121의3-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③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26의7-121의7-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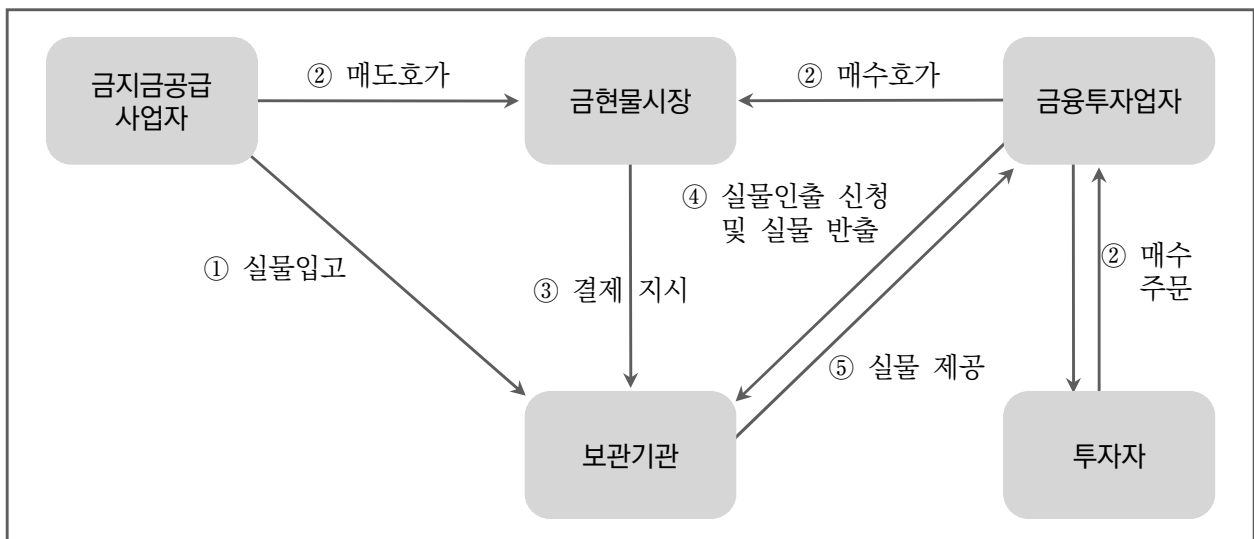
- ①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금지금의 보관·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 ②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는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26의7-121의7-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거래 흐름



- ①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다.
- ② 금공급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도 주문하고 투자자의 매수주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현물시장에서 매수주문하여 금현물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금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입한 자는 보관기관에 결제를 하여야 한다.
- ④ 금지금 실물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관기관에 인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집행기준** 127-0-1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 ① 내국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 공제유형
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8의3 ③)
② 통합투자세액공제(법 §24)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법 §26)

- ② 동일한 과세연도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법 §19①)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 §29의4)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법 §26)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 §29의5)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30의4)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이 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27-0-2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면제 유형	투자세액공제 유형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6)	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법 §8의3)
②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법 §7)	② 내국법인의 벤처기업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 §13의2)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법 §12의2)	③ 통합투자세액공제(법 §24)
④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법 §31④,⑤)	④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25의6)
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 감면 승계(법 §32④)	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법 §26)
⑥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법 §62④)	⑥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법 §30의4)

세액감면·면제 유형	투자세액공제 유형
⑦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63①)	⑦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14)
⑧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법 §63의2①)	⑧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15)
⑨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법 §64)	⑨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법 §104의22)
⑩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법 §66)	⑩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25)
⑪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법 §67)	⑪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122의4①)
⑫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법 §68)	⑫ 금 현물시장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6의7⑧)
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85의6①, ②)	
⑭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99의9 ②)	
⑮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산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99의11①)	
⑯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법 §104의24①)	
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 §121의8)	
⑱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9②)	
⑲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121의17②)	
⑳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121의20②)	
㉑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법 §121의21②)	
㉒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121의22②)	
㉓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1의33②)	

- ② 공제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액감면과 해당 이월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 ①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면제 유형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6)	⑪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산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99의11①)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7)	⑫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법 §104의24①)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법 §12의2)	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8)
④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 감면 승계(법 §31④,⑤)	⑭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증자의 조세감면(법 §121의4)
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 감면승계(법 §32④)	⑮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 §121의8)
⑥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법 §62④)	⑯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9②)
⑦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63①)	⑰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17②)
⑧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법 §63의2①)	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20②)
⑨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법 §64)	⑲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1의21②)
⑩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85의6①, ②)	⑳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1의22②)
	㉑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3의33②)

- ② 동일부지 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27-0-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에 열거된 규정의 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법 §121의2 또는 법 §121의4)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 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8의3③)
- ② 통합투자세액공제(법 §24)
-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법 §26)
- ④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 §29의5)
- 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 §29의7)
- ⑥ 통합고용세액공제(법 §29의8①)
- ⑦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30의4)
- ⑧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104의14)
- ⑨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법 §104의15)

공제  
세액  
계산  
방법

$$\text{공제세액} = \text{공제할 투자세액} \times \frac{\text{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소유지분}^*}{\text{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 사업연도 중 내국인투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 평균자본금 비율에 의한다.

$$\frac{(\text{변경전 내국인자본금} \times \text{변경전 일수}) + (\text{변경후 내국인자본금} \times \text{변경후 일수})}{(\text{변경전 총자본금} \times \text{변경전 일수}) + (\text{변경후 총자본금} \times \text{변경후 일수})}$$

집행기준

127-0-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사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법 §121의2 또는 §121의4)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6)
-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7)
-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 §12의2)
- ④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법 §31④및⑤)
- 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법 §32④)
- ⑥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법 §62④)
- ⑦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63①)
- ⑧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법 §63의2①)
- ⑨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64)
- ⑩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85의6①, ②)
- ⑪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99의9②)
- ⑫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99의11①)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사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법 §121의2 또는 §121의4)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법 §104의24①)
- 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8)
- ⑮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9②)
- ⑯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17②)
- 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20②)
- ⑱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21②)
- ⑲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22②)
- ⑳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33②)

**집행기준**

127-0-6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자 외의 사업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여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27-0-7

토지양도에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27-0-8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시 감면과 과세이연 동시 적용 여부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8, 2022.12.23.)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제24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추계결정시 적용 배제	
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7의2)	⑩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4)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법 §7의4)	⑪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5)
③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8의3 ③)	⑫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7)
④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10)	⑬ 통합고용세액공제(법 §29의8)
⑤ 기술취득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②)	⑭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30의3)
⑥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의3)	⑮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30의4)
⑦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의4)	⑯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96의3)
⑧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3의2)	⑰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99의12)
⑨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 기업에서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법 §13의3)	⑱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14)
⑩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법 §19①)	⑳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04의15)
⑪ 통합투자세액공제 (법 §24)	㉑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25)
⑫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의6)	㉒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30)
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 §26)	㉓ 금사업자와 스크램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122의4①)
⑭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2)	㉔ 금 현물시장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6의7⑧)
⑮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3)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신고 결정 및 기한 후 신고시 적용 배제되는 조세지원제도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6)	⑮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법 §9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7)	⑯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법 §96의2)
③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 §12①, ③)	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96의3)
④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법 §12의2)	⑱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99의9②)
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법 §31④,⑤)	⑲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99의11①)
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월감면(법 §32④)	⑳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법 §99의12)
⑦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법 §62④)	㉑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법 §102)
⑧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법 §63①)	㉒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법 §104의24①)
⑨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법 §63의2①)	㉓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 §121의8)
⑩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법 §64)	㉔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9②)
⑪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 §66)	㉕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17②)
⑫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 §67)	㉖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20②)
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 §68)	㉗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21②)
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법인세 등 감면(법 §85의6①,②)	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1의22②)
	㉙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3의33②)

**집행기준** 128-122-1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집행기준 128-0-2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28-122-2 **사업용계좌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배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기준 128-0-2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제사유	
① 소법 §160의5③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무 불이행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제외
② 소법 §162의3① 또는 법법 §117의2①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및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가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집행기준** 130-124-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증설투자를 말한다.
  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2.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② 제1항에서의 증설투자는 다음 각 호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1. 디지털방송장비 :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정보통신장비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에서의 증설투자
-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30-124-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설치 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대상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서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이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집행기준** 132-126-1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b>대상법인</b>	① 내국법인(당기순이익 과세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조특법 §72①)은 제외) ②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법법 §91①)
<b>대상 법인세</b>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내국법인) ② 종합과세되는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외국법인) ③ 법인세 중 다음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법 §55의2) 2. 외국법인의 지점세(법법 §96)

대상 법인세	3.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법 §100의32) 4. 가산세 5. 사후관리에 따라 추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조특령 §126①) 6.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조특법 §132①3호·4호)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및 감면(조특령 §126②)												
최저한세 적용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는 다음 2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Max (①, ②) ①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② 각종 감면 후 법인세액 → ②의 세액이 ①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상당액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b>[최저한세율]</b> <div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구분</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td> <td>7%</td> </tr> <tr> <td>유예기간 (4년)</td> <td>7%</td> </tr> <tr> <td>유예기간 이후 1~3년차</td> <td>8%</td> </tr> <tr> <td>유예기간 이후 4~5년차</td> <td>9%</td> </tr> <tr> <td>일반기업(과표규모별 구분)</td> <td>10% (1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이하), 17% (1,000억원 초과)</td> </tr> </tbody> </table> </div>	구분	세율	중소기업	7%	유예기간 (4년)	7%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일반기업(과표규모별 구분)	10% (1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이하), 17% (1,000억원 초과)
구분	세율												
중소기업	7%												
유예기간 (4년)	7%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일반기업(과표규모별 구분)	10% (1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이하), 17% (1,000억원 초과)												

**집행기준**

132-126-2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감면유형	조세감면제도	조 문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 불산입, 비과세 (1)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액의 특례 등	법 §8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 §8의2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법 §10의2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법 §13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4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법률 개정 2014.12.23.)	법 §28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 §28의2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 §28의3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55의2④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 §60②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 §61③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법 §62①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법 §63④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법 §63의2④

감면유형	조세감면제도	조 문
세액공제 (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7의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7의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법 §8의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법 §10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②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의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의4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3의2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 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법 §13의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법 §19
	통합투자세액공제	법 §2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의6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의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 §26
세액공제 (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	법 §29의2~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7
	통합고용세액공제	법 §29의8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30의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30의4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등	법 §31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 §32④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99의 1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8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1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04의15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25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30
금사업자와 스크램블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2의4①	
금 현물시장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6의7⑧	
세액감면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다만,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100% 감면 과세연도 및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	법 §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 §7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①,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법 §12의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법 §21

감면유형	조세감면제도	조 문
세액감면 (4)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법 §31④,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법 §32④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법 §62④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다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법 §63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법 §6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	법 §6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 §96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 §96의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법 §99의9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법 §10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법 §121의 8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법 §121의 9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법 §121의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법 §121의 2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법 §121의 2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100% 세액을 감면 받는 과세연도 제외)	법 §121의22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100% 세액을 감면 받는 과세연도 제외)	법 §121의33	

집행기준

132-126-3

최저한세액의 계산

- ① 집행기준 132-126-1에서 법인세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한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이라 함은 집행기준 132-126-2에서의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즉, 과세표준에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②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감면세액 등을 계산하기 위한 “감면 후 법인세액”이라 함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132-126-2에서 규정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한 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

- ③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 ④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 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임의로 감면배제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법 §132①2호, ②2호)
  2. 세액공제(법 §132①3호 및 ②3호).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3.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법 §132①4호 및 ②4호)
  4. 소득공제 및 비과세(법 §132①2호 및 ②2호)

**집행기준** 132-126-4 **개인의 최저한세**

<b>대상 소득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6)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li> <li>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li> <li>③ 소득세 중 다음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산세</li> <li>2.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조특령 §126①)</li> <li>3.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조특법 §132②3호·4호)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및 감면(조특령 §126④)</li> </ol> </li> </ul>
<b>최저한세 적용</b>	<p>개인이 부담할 소득세는 다음 2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Max (①,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45% (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35%)</li> <li>②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의 세액이 ①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상당액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li> </ul> </li> </ul> <p>*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조특법 §132②1호,2호)인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 소득공제, 손금산입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산출세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text{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금액})</math> </div> <p>**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132-126-5에서 규정된 각종 조세 지원제도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p>

감면유형	조세감면제도	조 문
소득공제, 손금산입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액의 특례 등	법 §8
	연구개발관련 출연준비금 등의 과세특례	법 §10의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 §16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법 §28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법 §28의2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법 §28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 §86의3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법 §132의2	
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7의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7의4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8의3③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법 §10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법 §19①
	통합투자세액공제	법 §24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의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 §26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2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7
	통합고용세액공제	법 §29의8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30의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30의4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등	법 §31⑥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법 §32④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99의12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8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1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04의1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25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30	

감면유형	조세감면제도	조문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법 §122의3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2의4①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6의3②
	금 현물시장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6의7⑧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 §7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①,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법 §12의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법 §21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법 §31④,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법 §32④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법 §63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6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 §96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 §96의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99의9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법 §102
	제주첨단과학기술 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121의8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121의9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121의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121의2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121의2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	법 §121의22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법 §121의33

집행기준

133-0-1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원인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아래의 감면세액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 ①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3)
- ②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43)
- ③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66)
- ④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67)
- 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68)
- 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69)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아래의 감면세액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 ⑦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2)
- ⑧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3)
- ⑨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4)
- 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0)
- ⑪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
- ⑫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7의2)
- 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의3)
- ⑭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85의10)
- ⑮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법률 제6538호 부칙 §29)

\*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133-0-2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원인 경우**

〈삭 제〉

\*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연간 1억원으로 감면한도 일원화됨.  
 다만,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2015.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공익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등 감안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12.31. 이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2억원) 적용

**집행기준 133-0-3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범위**

구 분	감면한도액 계산
1억원	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0)
2억원	①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7) ③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8) ④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 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2) ⑥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3) ⑦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4) ⑧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0) ⑨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 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7의2)

\* 다만,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2017.12.31.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1/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5년간 3억) 적용

**집행기준** 133-0-4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 계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사례**

- 2016년 : 농지대토 감면 1억원
- 2017년 : 신축주택 감면 5천만원
- 2018년 : 자경농지 감면 5천만원 신청, 농지대토 감면 5천만원 신청
- ☞ 자경농지 감면한도액은 농지대토 감면을 포함하여 5년 기간 동안 2억원으로 2018년도에 감면 신청한 5천만원은 자경농지 감면 가능
- ☞ 농지대토 감면한도액은 5년 기간 동안 1억원으로 2018년에 감면 신청한 5천만원은 감면 배제

**집행기준** 133-0-5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제한이 없는 경우

구 분	해당법령
장기임대·신축임대주택 감면	조특법 §97, §97의2
미분양주택 감면	조특법 §98, §98의2, §98의3
신축주택 감면	조특법 §99, §99의3

집행기준 143-136-1 구분경리

- ① 내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함)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 ③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제2항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④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 (2) 채무면제익
  - (3) 원가차익
  - (4) 채권추심익
  -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수입배당금
- (2) 수입이자
- (3) 유가증권처분익
- (4) 수입임대료
- (5) 가지급금인정이자
- (6) 고정자산처분익
- (7) 수증익

##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매출원가
-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전입액
-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유가증권 처분손
- (2) 고정자산 처분손

##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사채발행비 상각
-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 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월공제 적용 대상 세액공제	
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7의2)	⑦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의4)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7의4)	⑧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3의2)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법 §8의3)	⑨ 통합투자세액공제 (법 §24)
④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의6)
⑤ 기술취득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의2)	⑪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25의7)
⑥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의3)	⑫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 §26)

이월공제 적용 대상 세액공제	
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법 §29의2~5)	⑳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04의15)
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의7)	㉑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법 §104의22)
⑮ 통합고용세액공제(법 §29의8)	㉒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25)
⑯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30의3)	㉓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 §104의30)
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30의4)	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법 §104의32)
⑱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96의3)	㉕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122의4①)
⑲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99의12)	㉖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6의6)
㉑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104의5)	㉗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6의7⑧)
㉒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8)	㉘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구 법 §37) (법률 제5584호 부칙 §12②)
㉓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14)	

- ② 당초 신고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 ③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집행기준** 144-136의2-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한도

- ① 집행기준 144-0-1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단서(법 §26①2호 단서)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사후관리 (법 §26⑥)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 2.5천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 2천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등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중소기업 1.5천만원)
    -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다. 법 §26⑥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②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1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1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제3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집행기준**

146-137-1

**감면세액의 추정**

- ① 다음의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영 제137조제3항의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적용 대상 세액공제**

- 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8의3③)
- ② 통합투자세액공제(법 §24)
-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법 §26)
- ④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구 법 §37)  
(법률 제5584호 부칙 §12②)

- ② 제1항에서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등(법령 §39①(1)나목)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공정을 임가공하기 위해 수탁기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라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수탁기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생산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4년 세법집행기준 신규조문 대비표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분야)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18-16-1	<p>① .....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 * 외국인기술자란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p> <p>라. 영 제16조의3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행정사무 제외)하는 사람일 것</p>	<p>① .....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 * 외국인기술자란 ..... (삭제) .....</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 ① .....</p> <p>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16조의3 제2항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p>
조세특례제한법 18-16-2	<p>○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2019.1.1. 이후 2023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감면기간 5년 (예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2019. 3.10. 최초로 근로 제공하는 경우 : 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인 2024년3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 감면</p>	<p>○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19.1.1. 이후 2026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감면기간 10년 (예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2019. 3.10. 최초로 근로 제공하는 경우 : 10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인 2029년3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 감면</p> <p>※ 2022.12.31. 5년→10년 개정, 2023. 1.1.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적용 (부칙 제19199호 제9조)</p>
조세특례제한법 18의2-16의2-1	<p>① 외국인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특수관계기업에 근로 제공한 경우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p>	<p>① 외국인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특수관계기업에 근로제공한 경우 제외)함으로써 받는</p>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p>조세특례제한법 18의2-16의2-1</p>	<p>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p> <p>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사례 신설)</p>	<p>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p> <p>※ 2022.12.31. 5년→20년 개정, 2023. 1.1.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부칙 제19199호 제10조)</p> <p>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소득령 §17의4 제1호)은 제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 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p> <p>「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p>
<p>조세특례제한법 121의2-116의2-4</p>	<p>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방식에 해당하는 .....</p>	<p>법 §121의2①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방식에 해당하는 .....</p>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121의2-116의2-5	(사례 신설)	*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미포함(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0, 2022. 06.16.)
조세특례제한법 121의5-0-1	* 이자상당액 = 감면세액 × 감면받은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감면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 0.022% (단, 2022.2.15.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0.25%을 적용함)	* 이자상당액 = 감면세액 × 감면받은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감면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 0.022% (단, 2022.2.15.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0.025%을 적용, 2019.2.12.전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0.03%)
조세특례제한법 127-0-4	(추 가)	⑥ 통합고용세액공제(법 §29의8①)
조세특례제한법 127-0-5	(추 가)	⑳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33㉔)

2024년 세법집행기준 신규조문 대비표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분야)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106-0-5	③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단이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단순히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명의로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 하고 받는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 지방공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 ..... ..... .....
조세특례제한법 106의2-0-1	1.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 (이하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2023.12.31.까지 면세) 가. 생략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 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농업기계·임업기계·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 하는 석유류(2022.12.31.까지 면세)	1. .... ..... ..... ..... (2026.12.31.까지 면세) 가. .... 나. .... ..... 수산업협동조합, 연연초생산 협동조합·중앙회 ..... ..... ..... 2. .... ..... (2025.12.31.까지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106의9-106의13-1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 ① 다음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 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 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피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 분의 40이상인 물품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 해용 스크랩 잉곳	스크랩 ..... ① ..... ..... ..... 1. .... ..... 비철금속류의 ..... ..... 비철금속류의 ..... ..... 2. (삭 제) 2. .... .....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p>조세특례제한법 106의9-106의13-1</p>	<p>③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u>스크랩 등 계좌</u>를 사용하여 스크랩 등의 가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p> <p>④ 스크랩 등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u>스크랩 등 거래계좌</u>를 개설할 수 있으며, 동 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p>	<p>③ ..... ..... ..... <u>스크랩등거래계좌</u> ..... ..... .....</p> <p>④ ..... ..... <u>스크랩등거래계좌</u> ..... ..... .....</p>
<p>조세특례제한법 106의9-106의13-2</p>	<p><u>구리 스크랩 등 거래 계좌 미사용시 제재</u></p> <p>③ <u>스크랩 등 거래계좌</u>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u>스크랩등거래계좌</u> ..... .....</p> <p>③ <u>스크랩등거래계좌</u> ..... ..... ..... .....</p>

2024년 세법집행기준 신규조문 대비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분야)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0-1	세법개정 전	세법개정분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0-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이하생략)	일반기부금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132-126-5	세법개정 전	세법개정분 반영

**2024년 세법집행기준 신규조문 대비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분야)**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5-0-1	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완료일의 기준	조특 24-0-1로 이관
조세특례제한법 5-0-2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조특 24-0-2로 이관
조세특례제한법 5-0-4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사업소득의 범위	조특 24-0-3으로 이관
조세특례제한법 7-0-2	② 중소기업의 감면비율 지식기반산업 : 10%	지식기반산업 감면비율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7의4-6의4-1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 ② (생략) 1. (생략) 2. ... 15일 초과 60일 이내 ...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 ② (생략) 1. (생략) 2. ... 15일 초과 30일 이내 ...
조세특례제한법 8의3-7의2-1	① ...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 ② ...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	① ...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 ② ...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24-21-1	③ 세액공제 = ① + ② ① 기본공제금액 : 해당연도 투자금액 × 1%(중견 3%, 중소 10%)	③ 세액공제 = ① + ② ① 기본공제금액 : 해당연도 투자금액 × 1%(중견 5%, 중소 10%)
조세특례제한법 24-21-3	〈신 설〉	재화구매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산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60-56-1	대상자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적용시한 : 2022년 12월 31일	대상자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적용시한 : 2025년 12월 31일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p>조세특례제한법 63-60-1</p>	<p>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p>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p>조세특례제한법 63-60-3</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19 943 778 1010">감면기간</th> <th data-bbox="778 943 922 1010">감면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9 1010 778 1178">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td> <td data-bbox="778 1010 922 1178" rowspan="2">법인세 (소득세)의 100%</td> </tr> <tr> <td data-bbox="419 1178 778 1402">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 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시행령 §60④의 지역(생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표 생략)</td> </tr> <tr> <td data-bbox="419 1402 778 1491">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td> <td data-bbox="778 1402 922 1491" rowspan="2">법인세 (소득세)의 50%</td> </tr> <tr> <td data-bbox="419 1491 778 2016">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td> </tr> </tbody> </table>	감면기간	감면세액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 (소득세)의 100%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 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시행령 §60④의 지역(생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표 생략)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 (소득세)의 50%	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922 943 1281 1010">감면기간</th> <th data-bbox="1281 943 1420 1010">감면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22 1010 1281 2016"> <p>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p> <p>① 아래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p> <p>1.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p> <p>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p> <p>②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p> <p>1.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p> <p>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p> <p>③ ① 또는 ②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p> <p>1.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10년</p> </td> <td data-bbox="1281 1010 1420 2016" rowspan="2">법인세 (소득세)의 100%</td> </tr> </tbody> </table>	감면기간	감면세액	<p>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p> <p>① 아래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p> <p>1.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p> <p>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p> <p>②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p> <p>1.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p> <p>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p> <p>③ ① 또는 ②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p> <p>1.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10년</p>	법인세 (소득세)의 100%
감면기간	감면세액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 (소득세)의 100%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 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시행령 §60④의 지역(생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표 생략)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 (소득세)의 50%													
수도권 연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기간	감면세액													
<p>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p> <p>① 아래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p> <p>1.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p> <p>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p> <p>②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p> <p>1.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p> <p>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p> <p>③ ① 또는 ②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p> <p>1.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10년</p>	법인세 (소득세)의 100%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63-60-3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기간</th> <th>감면세액</th> </tr> </thead> <tbody> <tr> <td>2.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td> <td>법인세 (소득세)의 100%</td> </tr> <tr> <td>그 다음 2년(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td> <td>법인세 (소득세)의 50%</td> </tr> </tbody> </table>	감면기간	감면세액	2.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법인세 (소득세)의 100%	그 다음 2년(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 (소득세)의 50%												
감면기간	감면세액																			
2.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법인세 (소득세)의 100%																			
그 다음 2년(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 (소득세)의 50%																			
조세특례제한법 63의2-60의2-3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기간</th> <th>감면세액</th> </tr> </thead> <tbody> <tr> <td>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td> <td>법인세 (소득세)의 100%</td> </tr> <tr> <td>수도권 연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td> <td></td> </tr> <tr> <td>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td> <td>법인세 (소득세)의 50%</td> </tr> <tr> <td>수도권 연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td> <td></td> </tr> </tbody> </table>	감면기간	감면세액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 (소득세)의 100%	수도권 연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 (소득세)의 50%	수도권 연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기간</th> <th>감면세액</th> </tr> </thead> <tbody> <tr> <td>① 63-60-3 ①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td> <td rowspan="3">법인세 (소득세)의 100%</td> </tr> <tr> <td>② 63-60-3 ②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td> </tr> <tr> <td>③ ① 또는 ②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2. 1.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td> </tr> <tr> <td>그 다음 2년(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td> <td>법인세 (소득세)의 50%</td> </tr> </tbody> </table>	감면기간	감면세액	① 63-60-3 ①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법인세 (소득세)의 100%	② 63-60-3 ②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③ ① 또는 ②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2. 1.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그 다음 2년(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 (소득세)의 50%
감면기간	감면세액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 (소득세)의 100%																			
수도권 연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 (소득세)의 50%																			
수도권 연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기간	감면세액																			
① 63-60-3 ①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법인세 (소득세)의 100%																			
② 63-60-3 ②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③ ① 또는 ②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2. 1.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그 다음 2년(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법인세 (소득세)의 50%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2-100의32-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하는 내국법인	①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127-0-2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 유형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33의2) (추가)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유형 (삭제)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3의33②)																		
조세특례제한법 127-0-3 128-0-2	· 세액감면 유형 (추가)	· 세액감면 유형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3의33②)																		
조세특례제한법 132-126-2	· 세액공제 유형 (추가)	· 세액공제 유형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25의7)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3의33)																		

2024년 세법집행기준 신규조문 대비표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분야)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69-66-1	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 법인에게 201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 ..... 2026.12.31.까지 ..... ..... ..... ..... .....				
조세특례제한법 69의2-66의2-1	〈신 설〉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방의 명의로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 69의3-66의3-1	적용기한	적용기한				
	2020.12.31.	2025.12.31.				
조세특례제한법 70-67-2	<table border="1"> <tr> <td>종전 농지거주· 경작요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근로소득 등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li> </ul> </td> </tr> </table>	종전 농지거주· 경작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근로소득 등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li> </ul>	<table border="1"> <tr> <td>종전 농지거주· 경작요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li> <li>농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 (근로소득 등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li> </ul> </td> </tr> </table>	종전 농지거주· 경작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li> <li>농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 (근로소득 등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li> </ul>
종전 농지거주· 경작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근로소득 등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li> </ul>					
종전 농지거주· 경작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li> <li>농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 (근로소득 등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li> </ul>					
조세특례제한법 70-67-11	〈신 설〉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 하기 전에 일부 분할양도하거나, 분할 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대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도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70-67-11	<p>&lt;조문변경&gt;</p> <table border="1"> <tr> <td>가산하는 이자 상당액</td> <td>× 1일 3/10000</td> </tr> </table>	가산하는 이자 상당액	× 1일 3/10000	<p>조세특례제한법 70-67-11에서 70-67-12로 이관</p> <table border="1"> <tr> <td>가산하는 이자 상당액</td> <td>× 1일 22/100,000<sup>1)</sup> (2022.2.15.이후분)</td> </tr> </table> <p>1) 1일 3/10,000(2019.2.11.이전분), 1일 25/100,000(2019.2.12.~2022.2.14.)</p>	가산하는 이자 상당액	× 1일 22/100,000 <sup>1)</sup> (2022.2.15.이후분)
가산하는 이자 상당액	× 1일 3/10000					
가산하는 이자 상당액	× 1일 22/100,000 <sup>1)</sup> (2022.2.15.이후분)					
조세특례제한법 70의2-67의2-1	<신 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차 환매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농업인이 최초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하기 전 당해 농지를 취득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동 취득한 날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77의3-74-1	<내용변경>	표 구성 변경을 통한 요건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97-97-8	<신 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 임대주택 5호를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호에 “자가 거주” 하다 2000.12.31. 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97의2-97의2-8	<신 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97의3-97의3-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 및 기간 <내용변경>	<p>&lt;표 삭제&gt;</p> <p>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p>				
조세특례제한법 99의4-99의4-1	농어촌주택 가액기준 표 <내용변경>	<p>&lt;표 삭제&gt;</p> <p>동일한 날에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99의4-99의4-2	잔금청산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2003.8.1.~2020.12.31. 기간 내인 경우 로서 ...	..... 2003.8.1.~2025.12.31. .... .....
조세특례제한법 99의4-99의4-4	과세특례 비교표  〈내용변경〉	〈표 삭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127-0-8	〈신 설〉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133-0-1	〈내용 추가〉	*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 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20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024년 세법집행기준 신규조문 대비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분야)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30의5-27의5-1	<p>&lt;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 (증여세 과세 가액 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한도)</li> </ul>	<p>&lt;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 (증여세 과세 가액 5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원 한도)</li> </ul>				
조세특례제한법 30의5-27의5-2	<p>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p> <p>②~⑤ 번호이동</p>	<p>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p> <p>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p> <p>③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p>				
조세특례제한법 30의5-27의5-4	<p>&lt;추징사유&gt;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lt;추징대상금액&gt;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lt;가산하는 이자상당액&gt; 25/100,000</p>	<p>&lt;추징사유&gt;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lt;추징대상금액&gt;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lt;가산하는 이자상당액&gt; 22/100,000</p>				
조세특례제한법 30의6-27의6-1	(표 내용 추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 <p>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을 2008. 1.1. 이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p> <p>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p> <p>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p> </td> </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대상	<p>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을 2008. 1.1. 이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p> <p>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p> <p>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p>
구분	내 용					
대상	<p>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을 2008. 1.1. 이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p> <p>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p> <p>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p>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71-68-3	(표 내용 수정)	구분	내 용
		영농 자녀	다음 ① 과 ②를 모두 갖춘 자 ①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직계비속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71-68-4	(표 내용 수정)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 × 감면받은 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22/100,000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계법령 및  
관련해석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발행일자

2024년 10월

### 발행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 집필·편집

법규과장 신 상 모

행정사무관 전 준 희 행정사무관 이 광 의

서기관 방 선 아 행정사무관 최 영 훈

행정사무관 노 영 인 행정사무관 한 정 미

서기관 최 은 경

### 전화

044) 204 - 3102 - 45

### 팩스

044) 216 - 6072

본 책자는 국세청 종사직원과 납세자의 실무 지침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이므로 출판을 목적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